



제2957호 2024. 7. 19.(금)

www.jeonbuk.go.kr.

고 시

- 고시 제2024-226호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고시 1
- 고시 제2024-227호 하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3
- 고시 제2024-228호 고창 만수당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고시 4
- 고시 제2024-229호 보호수 지정 고시 8
- 고시 제2024-23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9
- 고시 제2024-232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0
- 고시 제2024-233호 완주 송광사 금강문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해제 고시 62
- 고시 제2024-234호 광활3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63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2024-68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7
- 입법예고 제2024-69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92

공 고

- 공고 제2024-1262호 비영리민간단체(전라북도주민자치협의회) 명칭 변경등록 공고 108
- 공고 제2024-126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사항 공고 109
- 공고 제2024-12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 공고 110
- 공고 제2024-1279호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 공고 111

지시사항

- 2024. 7. 12.(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12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4-9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15
○ 군산시 공고 제2024-159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부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117
○ 익산시 고시 제2024-145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0
○ 익산시 고시 제2024-14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1
○ 완주군 고시 제2024-78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22
○ 완주군 고시 제2024-79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23
○ 완주군 고시 제2024-82호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봉동읍행정복지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	124
○ 완주군 공고 제2024-1141호 완주 군계획시설(학교.삼봉유치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126
○ 고창군 공고 제2024-1296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열람공고	127

기 타

○ 전주완산소방서 공고 제2024-1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 송달	131
---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26호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7월 19일

■ 고 시 사 항**①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개요**

- 명 칭 :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93번지외 13필
- 조성면적 : 10,051㎡(형질변경 5,175㎡)
- 조성기간 : 2021~2024년(4년)
- 법률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 투자금액 : 6,000백만원(도비 3,000, 군비 3,000)
 - 투자계획 : ('21) 200, ('22) 2,600, ('23) 3,200
- 주요시설 : 체험지원센터, 트리탑, 외줄이동시설, 공중이동시설, 로프체험시설 등

② 산림레포츠 세부시설계획

세부시설	단위	사업규모	수량	시설 면적	형질 변경	건축		비고
						대지 면적	연면적	
합 계				10,051	5,175	1,247	266	
복합모 험시 설	체험지원센터(사무실)	동						
		지하 1층	1	1,247	1,247	1,247	266	
		지상 2층						
	트리탑시설	개소	높이 15m	1	473	415		
	외줄이동시설	개소	거리 931.9m	1	3,032	360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개소	거리 415.7m	1	2,404	398		
	로프체험시설	개소	코스수 65EA	1	1,270	1,130		
	주차장 및 기타시설	개소	면적 1,328㎡	1	1,345	1,345		
	산책로 및 부대시설	개소	거리 84.0	1	280	280		

③ 시설물 배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227호

하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추진 중인 하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7월 19일

1. 사 업 명 : 하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727-2 (하리배수장내)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888-1 (어전배수장내)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4-3 (마산배수장내)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40-7 (화전배수장내)
3.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2,062ha
5. 사업개요 : 배수장 4개소
6. 사업기간 : 2024. 7. ~ 2026. 6. (3개년)
7. 총사업비 : 2,844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전화 063-270-054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28호

고창 만수당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8조, 제9조, 제1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19일

1. 고 시 명 : 고창 만수당 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고창 만수당

- 지정종목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제310호)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136, 137
- 시대 : 일제강점기 / 1916년
- 구조/형식 : 7량 구조 / 정면 4칸, 측면 4칸 / 팔작지붕 / 一자 양통집
- 규모 : 전체 1동(92.62㎡)
 - 문화유산보호구역 2필지 1,657.38㎡
- 소유자(관리단체) : 김경식
- 지정 사유
 - 만수당의 전체 목구조 규모는 7량가로 큰 규모이다. 평면구성은 ‘중청·양측실’ 형태이며, 양측실 후면뒷칸에는 고상마루를 들이고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강당 건물의 일반적 구성 형식을 따르고 있다. 특이하게도 독립된 굴뚝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전면기단석의 하대석에 구멍을 내어 건물 앞으로 연기가 나오도록 하였다는 점 등 건축적 가치가 높다.
 - 또한 만수당을 건립한 인물과 가문의 기록이 잘 남아있는 점, 그 터전이 된 건축물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점,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했던 공간으로도 활용된 적이 있는 점 등 역사적 가치가 있다.

3. 지 정 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7 / 전송 : 063-280-2539

나.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444 / 전송 : 063-560-2469

[붙임 1]

고창 만수당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구역)

지정구역 : 1필지 92.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고창읍 도산리	136	대	1,545	92.62	김** 외 4명
계					92.62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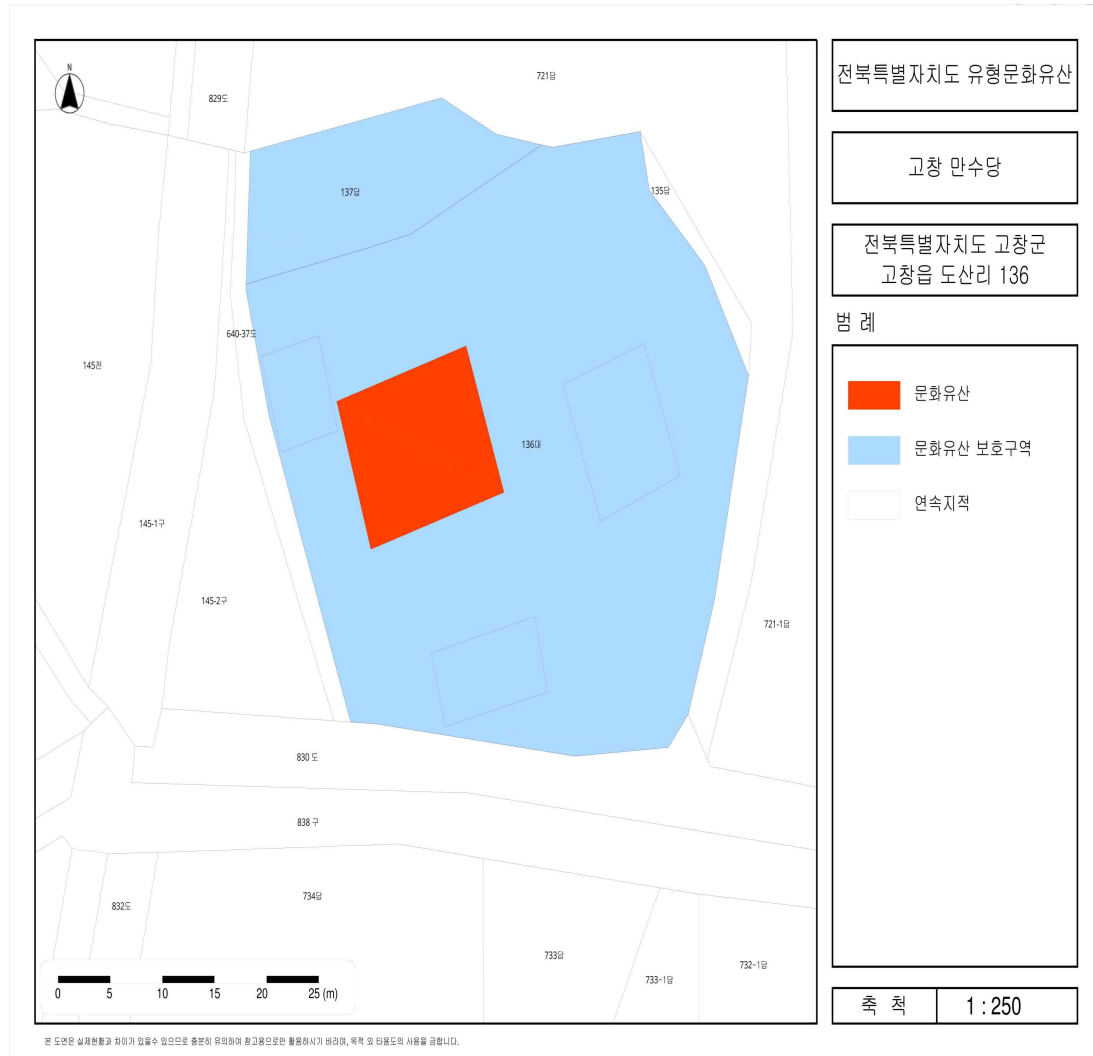
지정구역 : 2필지 1,657.3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고창읍 도산리	136	대	1,545	1,452.38	김** 외 4명
2	고창읍 도산리	137	답	205	205	김** 외 3명
계					1657.38	

[붙임 2]

고창 만수당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고시도면

□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29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7월 19일

■ 고 시 사 항

① 보호수 지정 내역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cm)	관리자	소유자	비고
남원시 주생면 주생내동길 57	느티나무	1	400	15	520	남원시장	내동마을	

② 지정사유 :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

③ 기타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063-280-4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3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김제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김제시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19일

1.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 분	농 업 진 흥 지 역			비 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북특별자치도	135,769.4	117,432.9	18,336.5	- 진 흥 : △0.8	- 보 호 :
김제시	21,626.6	20,089.4	1,537.2	- 진 흥 : △0.8	- 보 호 :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해제 사유

- 김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6번지 일원)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7,980m² 해제

3. 농업진흥지역 도면(1/5,000) 및 토지조서는 김제시에 보관한다.

4.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232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7월 19일

I.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
- 면적 : 2,110,582.7㎡ (1공구 1,868,913.6㎡, 2공구 180,152.6㎡, 3공구 61,516.5㎡)
 - 산업시설지구 : 1,715,763.6㎡ (1공구 1,532,287.4㎡, 2공구 121,997㎡, 3공구 61,516.5㎡)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 394,819.1㎡ (1공구 336,626.2㎡, 2공구 58,192.9㎡)
- 산업단지 외 사업 : 9,781㎡, 6개소(도로개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완주군에 강점이 있는 자동차/트레일러, 기계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통하여 신산업생산의 선도적 지역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산업 전략기지 구축을 위한 유치기반 마련에 따른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상업공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나아가 전북지역의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벨트 기반마련을 통하여 신성장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 최충식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166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13년 ~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13년 ~ 2024년 06월 30일
 - (1공구) : 2013년 ~ 2021년 12월 31일(변경없음)
 - (2공구) : 2013년 ~ 2023년 06월 30일(변경없음)
 - (3공구) : (기정) 2013년 ~ 2024년 6월 30일 (변경) 2013년 ~ 2024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비 고
산업 시설 용지	유치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한국표준 산업분류 10차개정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 입주제한 (5개업종)

- C3111(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C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C31999(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C29133(펌프,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C25922(도금업)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 계	760,604.6	722,976.0	37,628.6	100.0	95.0	5.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152,173.8	152,173.8	-	20.0	20.0	-	-
금속가공제품제조(25)	18,832.7	18,832.7	-	2.5	2.5	-	-
금속가공(25)+기타기계(29)	9,929.7	9,929.7	-	1.3	1.3	-	-
금속가공(25)+자동차(30)	6,605.1	6,605.1	-	0.9	0.9	-	-
금속가공(25)+전기장비(28) +기타기계(29)	15,009.0	15,009.0	-	2	2	-	-
금속가공(25)+전기장비(28) +기타기계(29)+자동차(30)	5,447.1	5,447.1	-	0.7	0.7	-	-
전자부품(26)+전기장비(28)	58,494.0	58,494.0	-	7.7	7.7	-	-
전기장비(28)	47,278.2	47,278.2	-	6.2	6.2	-	-
기타 기계 및 장비(29)	71,212.5	71,212.5	-	9.3	9.3	-	-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331,578.8	308,107.8	23,471.0	43.6	40.5	3.1	-
기타 운송장비(31)	44,043.7	29,886.1	14,157.6	5.8	3.9	1.9	-

※ 3공구 : 산업시설용지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총괄)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2,110,582.7	1,868,913.6	180,152.6	61,516.5	100.0	88.5	8.6	2.9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	56.4	54.6	1.8	0.0	
산업시설	760,604.6	722,976.0	37,628.6	-	36.0	34.2	1.8	0.0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	4.7	4.7	0.0	0.0	
물류시설	329,619.6	329,619.6	-	-	15.7	15.7	0.0	0.0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	10.1	9.1	1.0	0.0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	1.4	1.3	0.1	0.0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	6.5	6.5	0.0	0.0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	1.0	0.7	0.3	0.0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	1.2	0.6	0.6	0.0	
지원시설용지	63,122.4	5,867.5	14,623.3	42,631.6	3.0	0.3	0.7	2.0	
지원시설	60,750.0	3,495.1	14,623.3	42,631.6	2.9	0.2	0.7	2.0	
어린이집	1,184.9	1,184.9	-	-	0.1	0.1	0.0	0.0	
종교시설	1,187.5	1,187.5	-	-	0.1	0.1	0.0	0.0	
공공시설용지	644,173.2	518,371.6	106,916.7	18,884.9	30.5	24.5	5.1	0.9	
초등학교	15,129.9	15,129.9	-	-	0.7	0.7	0.0	0.0	
중학교	15,423.8	15,423.8	-	-	0.7	0.7	0.0	0.0	
공공청사	2,219.2	2,219.2	-	-	0.1	0.1	0.0	0.0	
도 로	306,527.0	239,329.9	54,563.7	12,633.4	14.5	11.3	2.6	0.6	
보행자도로	3,155.4	818.0	433.5	1,903.9	0.1	0.0	0.0	0.1	
주차장	25,425.7	12,667.1	8,411.0	4,347.6	1.2	0.6	0.4	0.2	
광장	1,390.8	488.5	902.3	-	0.1	0.0	0.1	0.0	
저류지	29,250.8	29,250.8	-	-	1.4	1.4	0.0	0.0	
공원·녹지	245,650.6	203,044.4	42,606.2	-	11.7	9.7	2.0	0.0	
공원	32,948.5	22,692.7	10,255.8	-	1.6	1.1	0.5	0.0	
완충녹지	32,942.3	13,819.0	19,123.3	-	1.6	0.7	0.9	0.0	
연결녹지	55,365.6	51,217.3	4,148.3	-	2.6	2.4	0.2	0.0	
하천	118,626.8	109,548.0	9,078.8	-	5.6	5.2	0.4	0.0	
공공공지	5,767.4	5,767.4	-	-	0.3	0.3	0.0	0.0	

< 산업시설지구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1,715,763.6	1,532,287.4	121,959.7	61,516.5	100.0	89.3	7.1	3.6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	69.4	67.2	2.2	0.0	
산업시설	760,604.6	722,976.0	37,628.6	-	44.3	42.1	2.2	0.0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	5.8	5.8	0.0	0.0	
물류시설	329,619.6	329,619.6	-	-	19.3	19.3	0.0	0.0	
지원시설용지	60,750.0	3,495.1	14,623.3	42,631.6	3.5	0.2	0.8	2.5	
지원시설	60,750.0	3,495.1	14,623.3	42,631.6	3.5	0.2	0.8	2.5	
공공시설용지	464,570.4	375,977.7	69,707.8	18,884.9	27.1	21.9	4.1	1.1	
도로	213,837.9	164,228.1	36,976.4	12,633.4	12.5	9.5	2.2	0.8	
보행자도로	1,903.9	-	-	1,903.9	0.1	0.0	0.0	0.1	
주차장	18,912.7	8,225.4	6,339.7	4,347.6	1.1	0.5	0.4	0.2	
저류지	29,250.8	29,250.8	-	-	1.7	1.7	0.0	0.0	
공원·녹지	200,665.1	174,273.4	26,391.7	-	11.7	10.2	1.5	0.0	
공원	13,503.8	9,511.4	3,992.4	-	0.8	0.6	0.2	0.0	
완충녹지	15,094.0	5,921.8	9,172.2	-	0.9	0.3	0.6	0.0	
연결녹지	53,440.5	49,292.2	4,148.3	-	3.1	2.9	0.2	0.0	
하천	118,626.8	109,548.0	9,078.8	-	6.9	6.4	0.5	0.0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 계	394,819.1	336,626.2	58,192.9	100.0	85.3	14.7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53.9	48.6	5.3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7.6	6.9	0.7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34.9	34.9	0.0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5.0	3.5	1.5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6.4	3.3	3.1	
지원시설용지	2,372.4	2,372.4	-	0.6	0.6	0.0	
어린이집	1,184.9	1,184.9	-	0.3	0.3	0.0	
종교시설	1,187.5	1,187.5	-	0.3	0.3	0.0	
공공시설용지	179,602.8	142,393.9	37,208.9	45.5	36.1	9.4	
초등학교	15,129.9	15,129.9	-	3.8	3.8	0.0	
중 학교	15,423.8	15,423.8	-	3.9	3.9	0.0	
공공청사	2,219.2	2,219.2	-	0.6	0.6	0.0	
도 로	92,689.1	75,101.8	17,587.3	23.5	19.0	4.5	
보행자도로	1,251.5	818.0	433.5	0.3	0.2	0.1	
주 차 장	6,513.0	4,441.7	2,071.3	1.6	1.1	0.5	
광 장	1,390.8	488.5	902.3	0.4	0.2	0.2	
공원·녹지	44,985.5	27,771.0	16,214.5	11.4	7.3	4.1	
공 원	19,444.7	13,181.3	6,263.4	4.9	3.3	1.6	
완충녹지	17,848.3	7,897.2	9,951.1	4.5	2.0	2.5	
연결녹지	1,925.1	1,925.1	-	0.5	0.5	0.0	
공공공지	5,767.4	5,767.4	-	1.5	1.5	0.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 도로계획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소계	68	16,750	309,682.4	19	6,633	115,719.4	10	3,822	82,905.6	39	6,295	111,057.4
	1공구	44	12,129	240,147.9	18	4,703	91,448.5	7	2,873	59,868.6	19	4,553	88,830.8
	2공구	11	3,417	54,997.2	1	1,839	24,070.1	1	520	15,952.0	9	1,058	14,975.1
	3공구	13	1,204	14,537.3	-	91	200.8	2	429.0	7,085.0	11	684	7,251.5
대로	소계	5	4,420	108,602.7	1	908	1,753.3	1	1,027	37,988.3	3	2,485	68,861.1
	1공구	4	3,258	91,420.2	1	182	466.3	1	737	26,225.3	2	2,339	64,728.6
	2공구	1	1,071	16,981.7	-	635	1,086.2	-	290	11,763.0	1	146	4,132.5
	3공구	-	91	200.8	-	91.0	200.8	-	-	-	-	-	-
중로	소계	31	9,348	172,639.2	7	3,778	92,741.7	9	2,795	44,917.3	15	2,775	34,980.2
	1공구	20	6,633	126,544.8	6	2,961	73,678.0	6	2,136	33,643.3	8	1,536	19,223.5
	2공구	6	1,887	33,661.8	1	817	19,063.7	1	230	4,189.0	4	840	10,409.1
	3공구	5	828	12,432.6	-	-	-	2	429	7,085.0	3	399	5,347.6
소로	소계	32	2,982	28,440.5	11	1,947	21,224.4	-	-	-	21	1,035	7,216.1
	1공구	20	2,238	22,182.9	11	1,560	17,304.2	-	-	-	9	678	4,878.7
	2공구	4	459	4,353.7	-	387	3,920.2	-	-	-	4	72	433.5
	3공구	8	285	1,903.9	-	-	-	-	-	-	8	285	1,903.9

* 공구분할에 따라 구분되는 대로1-1호선, 대로2-1호선은 1공구에 반영하여 1개소로 산정

○ 주차장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개소	비고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25,425.7	14	-1공구 : 8개소(12,667.1㎡) -2공구 : 4개소(8,411.0㎡) -3공구 : 2개소(4,347.6㎡)

2) 공간시설계획

○ 광장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개소	비고
기정	광 장	교통광장	81,317 (1,390.8)	1	-1공구 : 488.5㎡ -2공구 : 902.3㎡

* ()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면적임

○ 공원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개소	비고
기정	공 원	계	32,948.5	8	
		근린공원	11,678.4	1	1공구
		소 공 원	21,270.1	7	-1공구 : 5개소(11,014.3㎡) -2공구 : 2개소(10,255.8㎡)

○ 녹지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녹 지	계	88,307.9	11	
		연결녹지	55,365.6	6	-연결녹지 6개소 중 일부구간 2공구 (2개소 : 4,148.3m ²)
		완충녹지	32,942.3	5	-1공구 : 3개소(13,819.0m ²) -2공구 : 2개소(19,123.3m ²)

○ 공공공지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5,767.4	3	1공구

3)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 학교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학 교	계	30,553.7	2	
		중 학 교	15,423.8	1	1공구
		초등학교	15,129.9	1	1공구

○ 공공청사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공청사	공공청사	2,219.2	1	1공구

4) 방재시설계획

○ 하천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하 천	계	118,626.8	2	
		지방하천	110,707.2	1	석탑천 -1공구 : 104,303.0m ² -2공구 : 6,404.2m ²
		하천	7,919.6	1	만동천(소하천) 폐지(` 16.4.6) -1공구 : 5,245.0m ² -2공구 : 2,674.6m ²

○ 유수지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29,250.8	2	산업시설지구 2개소, 1공구

5)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급수량 (m³/일)	공 급 계 획	비 고
공업용수	800	○ 정수장 기존 공업용수(25,000m³/day)와 미사용중인 생활용수(5,000m³/day)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 ○ 배수지의 적정 체류시간(12h) 확보를 위해 증설예정	
생활용수	6,518	○ 전주권광역상수도를 통하여 공급(익산 식품클러스터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부족분 공급) ○ 배수지의 적정 체류시간(12h) 확보를 위해 증설예정	

○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계획오수량 (m³/일)	처 리 계 획	비 고
계	6,079	○ 신설 및 기존 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삼례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통수능이 부족한 차집관거는 개량하여 처리하도록 함	
공업폐수	424		
생활오수	5,655		

* 오·폐수처리장 시설운용은 공장입주율 및 실 폐수유입량을 모니터링 후 폐수처리시설 18,000m³/일의 80%(14,400m³/일)수준 도달시 개량하여 처리토록 함

○ 폐기물처리계획

구분	폐기물처리량 (kg/일)	처 리 계 획	비 고
생활 폐기물	1,281	○ 생활계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후 지자체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완주군 신규매립장 가동 전까지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 시설계+지정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후 최대한 자체 재활용 또는 주변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여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임 ○ 완주군 신규매립장 가동 후 발생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신규 매립장에 연계처리 계획임	
사업장 폐기물	54,047		

○ 에너지공급계획

구분	수요량	공 급 계 획	비 고
전력공급	산업시설용지 43,161kW	○ 봉동변전소(154kV)에서 전력공급 ○ 왕궁변전소 준공후 왕궁변전소에서 공급	
	기타주택 및 건축물 90,517kW		
열 공 급	산업시설용지 725,901Gcal/년	○ 전북도시가스(주)에서 공급	
	기타주택 및 건축물 132,246Gcal/년		

○ 통신공급계획

구분	통신수요량(회선)	공 급 계 획	비 고
통신공급	6,928	○ 단지내 ONU(초고속망공급장치 기계실)를 설치하여 공급예정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구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482,702	361,708	102,124	18,870	100.0	74.9	21.2	3.9	
용지비	170,392	149,143	19,621	1,628	35.3	30.9	4.1	0.3	• 토지·지장물보상, 간접보상, 부대비 등
조성비	215,145	150,875	53,583	10,687	44.6	31.3	11.1	2.2	• 조사설계비, 단지조성비 등
기타비용	97,165	61,690	28,920	6,555	20.1	12.7	6.0	1.4	• 각종부담금, 직접인건비, 관리비, 금융비용 등

나. 재원조달계획

○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계	482,702	10,212	141,632	49,189	48,034	22,210	111,927	32,616	66,882
	1공구	361,708	9,135	128,958	44,228	42,543	19,638	98,966	18,240	-
	2공구	102,124	1,077	12,674	4,961	5,491	2,572	12,961	11,508	50,880
	3공구	18,870	-	-	-	-	-	-	2,868	16,002
용지비	계	170,392	-	129,977	25,879	2,500	1,007	4,227	714	6,088
	1공구	149,143	-	118,617	23,617	2,281	890	3,738	-	-
	2공구	19,621	-	11,360	2,262	219	117	489	543	4,631
	3공구	1,628	-	-	-	-	-	-	171	1,457
조성비	계	215,145	3,725	1,241	13,586	33,718	9,594	87,981	20,629	44,671
	1공구	150,875	3,399	1,133	12,013	29,814	8,483	77,793	18,240	-
	2공구	53,583	326	108	1,573	3,904	1,111	10,188	2,389	33,984
	3공구	10,687	-	-	-	-	-	-	-	10,687
기타 비용	계	97,165	6,487	10,414	9,724	11,816	11,609	19,719	11,273	16,123
	1공구	61,690	5,736	9,208	8,598	10,448	10,265	17,435	-	-
	2공구	28,920	751	1,206	1,126	1,368	1,344	2,284	8,576	12,265
	3공구	6,555	-	-	-	-	-	-	2,697	3,858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계	482,702	10,212	141,632	49,189	48,034	22,210	111,927	32,616	66,882
	1공구	361,708	9,135	128,958	44,228	42,543	19,638	98,966	18,240	-
	2공구	102,124	1,077	12,674	4,961	5,491	2,572	12,961	11,508	50,880
	3공구	18,870	-	-	-	-	-	-	2,868	16,002
차 체 자 금	계	482,702	10,212	141,632	49,189	48,034	22,210	111,927	32,616	66,882
	1공구	361,708	9,135	128,958	44,228	42,543	19,638	98,966	18,240	-
	2공구	102,124	1,077	12,674	4,961	5,491	2,572	12,961	11,508	50,880
	3공구	18,870	-	-	-	-	-	-	2,868	16,002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

- 위 치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진입부
- 사업내용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진입도로 개설
- 사업기간 :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병행(2016년 ~ 2020년)

-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 치 : 삼례폐수종말처리장
- 사업내용 : 고도처리시설 증설($Q=9,000\text{m}^3/\text{일}$)
- 사업기간 :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병행(2016년 ~ 2020년)

- 용수공급시설

- 위 치 : 완주산업단지 정수장
- 사업내용 : 용수공급시설(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배수지 등) 증설
- 사업기간 :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병행(2016년 ~ 2020년)

10. 관련도서 열람 방법

-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완주군청(미래전략담당관 ☎ 063-29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II. 실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변경없음)

- 법인의 명칭 :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최충식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도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16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목적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업종인 자동차/트레일러,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증대하여 신산업생산의 선도적 지역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상업공간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나아가 전북 북부지역의 거점산업기반 마련을 통하여 신성장산업의 기반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음
- 사업의 개요
 - 사업규모 : 2,110,582.7㎡
 - 유치업종

☐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구분	유치업종
산업 시설 용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입주제한 (5개업종) : C3111(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C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1999(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C29133(탱, 펌프 및 유사 장치 제조업), C25922(도금업)

- 법적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
- 사업면적 : 2,110,582.7㎡(1공구 1,868,913.6㎡, 2공구 180,152.6㎡, 3공구 61,516.5㎡)
 - 산업시설지구 : 1,715,763.6㎡ (1공구: 1,532,287.4㎡, 2공구: 121,989.7㎡, 3공구: 61,516.5㎡)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 394,819.1㎡ (1공구: 336,626.2㎡, 2공구: 58,192.9㎡)

5. 사업시행 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민관합동개발
- 시행기간 : (기정) 2013년 ~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13년 ~ 2024년 06월 30일
 - 1공구 : 2013년 ~ 2021년 12월 31일(변경없음)
 - 2공구 : 2013년 ~ 2023년 6월 30일(변경없음)
 - 3공구 : (기정) 2013년 ~ 2024년 6월 30일 (변경) 2013년 ~ 2024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1.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총괄)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2,110,582.7	1,868,913.6	180,152.6	61,516.5	100.0	88.5	8.6	2.9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	56.4	54.6	1.8	0.0	
산업시설	760,604.6	722,976.0	37,628.6	-	36.0	34.2	1.8	0.0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	4.7	4.7	0.0	0.0	
물류시설	329,619.6	329,619.6	-	-	15.7	15.7	0.0	0.0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	10.1	9.1	1.0	0.0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	1.4	1.3	0.1	0.0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	6.5	6.5	0.0	0.0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	1.0	0.7	0.3	0.0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	1.2	0.6	0.6	0.0	
지원시설용지	63,122.4	5,867.5	14,623.3	42,631.6	3.0	0.3	0.7	2.0	
지원시설	60,750.0	3,495.1	14,623.3	42,631.6	2.9	0.2	0.7	2.0	
어린이집	1,184.9	1,184.9	-	-	0.1	0.1	0.0	0.0	
종교시설	1,187.5	1,187.5	-	-	0.1	0.1	0.0	0.0	
공공시설용지	644,173.2	518,371.6	106,916.7	18,884.9	30.5	24.5	5.1	0.9	
초등학교	15,129.9	15,129.9	-	-	0.7	0.7	0.0	0.0	
중학교	15,423.8	15,423.8	-	-	0.7	0.7	0.0	0.0	
공공청사	2,219.2	2,219.2	-	-	0.1	0.1	0.0	0.0	
도 로	306,527.0	239,329.9	54,563.7	12,633.4	14.5	11.3	2.6	0.6	
보행자도로	3,155.4	818.0	433.5	1,903.9	0.1	0.0	0.0	0.1	
주차장	25,425.7	12,667.1	8,411.0	4,347.6	1.2	0.6	0.4	0.2	
광장	1,390.8	488.5	902.3	-	0.1	0.0	0.1	0.0	
저류지	29,250.8	29,250.8	-	-	1.4	1.4	0.0	0.0	
공원·녹지	245,650.6	203,044.4	42,606.2	-	11.7	9.7	2.0	0.0	
공원	32,948.5	22,692.7	10,255.8	-	1.6	1.1	0.5	0.0	
완충녹지	32,942.3	13,819.0	19,123.3	-	1.6	0.7	0.9	0.0	
연결녹지	55,365.6	51,217.3	4,148.3	-	2.6	2.4	0.2	0.0	
하천	118,626.8	109,548.0	9,078.8	-	5.6	5.2	0.4	0.0	
공공공지	5,767.4	5,767.4	-	-	0.3	0.3	0.0	0.0	

< 산업시설지구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1,715,763.6	1,532,287.4	121,959.7	61,516.5	100.0	89.3	7.1	3.6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	69.4	67.2	2.2	0.0	
산업시설	760,604.6	722,976.0	37,628.6	-	44.3	42.1	2.2	0.0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	5.8	5.8	0.0	0.0	
물류시설	329,619.6	329,619.6	-	-	19.3	19.3	0.0	0.0	
지원시설용지	60,750.0	3,495.1	14,623.3	42,631.6	3.5	0.2	0.8	2.5	
지원시설	60,750.0	3,495.1	14,623.3	42,631.6	3.5	0.2	0.8	2.5	
공공시설용지	464,570.4	375,977.7	69,707.8	18,884.9	27.1	21.9	4.1	1.1	
도로	213,837.9	164,228.1	36,976.4	12,633.4	12.5	9.5	2.2	0.8	
보행자도로	1,903.9	-	-	1,903.9	0.1	0.0	0.0	0.1	
주차장	18,912.7	8,225.4	6,339.7	4,347.6	1.1	0.5	0.4	0.2	
저류지	29,250.8	29,250.8	-	-	1.7	1.7	0.0	0.0	
공원·녹지	200,665.1	174,273.4	26,391.7	-	11.7	10.2	1.5	0.0	
공원	13,503.8	9,511.4	3,992.4	-	0.8	0.6	0.2	0.0	
완충녹지	15,094.0	5,921.8	9,172.2	-	0.9	0.3	0.6	0.0	
연결녹지	53,440.5	49,292.2	4,148.3	-	3.1	2.9	0.2	0.0	
하천	118,626.8	109,548.0	9,078.8	-	6.9	6.4	0.5	0.0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 계	394,819.1	336,626.2	58,192.9	100.0	85.3	14.7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53.9	48.6	5.3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7.6	6.9	0.7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34.9	34.9	0.0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5.0	3.5	1.5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6.4	3.3	3.1	
지원시설용지	2,372.4	2,372.4	-	0.6	0.6	0.0	
어린이집	1,184.9	1,184.9	-	0.3	0.3	0.0	
종교시설	1,187.5	1,187.5	-	0.3	0.3	0.0	
공공시설용지	179,602.8	142,393.9	37,208.9	45.5	36.1	9.4	
초등학교	15,129.9	15,129.9	-	3.8	3.8	0.0	
중 학 교	15,423.8	15,423.8	-	3.9	3.9	0.0	
공공청사	2,219.2	2,219.2	-	0.6	0.6	0.0	
도 로	92,689.1	75,101.8	17,587.3	23.5	19.0	4.5	
보행자도로	1,251.5	818.0	433.5	0.3	0.2	0.1	
주 차 장	6,513.0	4,441.7	2,071.3	1.6	1.1	0.5	
광 장	1,390.8	488.5	902.3	0.4	0.2	0.2	
공원·녹지	44,985.5	27,771.0	16,214.5	11.4	7.3	4.1	
공 원	19,444.7	13,181.3	6,263.4	4.9	3.3	1.6	
완충녹지	17,848.3	7,897.2	9,951.1	4.5	2.0	2.5	
연결녹지	1,925.1	1,925.1	-	0.5	0.5	0.0	
공공공지	5,767.4	5,767.4	-	1.5	1.5	0.0	

6-2.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2,110,582.7	1,868,913.6	180,152.6	61,516.5	100.0	
주거지역	395,456.8	336,626.2	58,830.6	-	18.7	
제1종일반주거지역	156,774.6	134,875.5	21,899.1	-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736.7	171,818.9	2,917.8	-	8.3	
준주거지역	63,945.5	29,931.8	34,013.7	-	3.0	
공업지역	1,715,125.9	1,532,287.4	121,322.0	61,516.5	81.3	
일반공업지역	1,594,401.7	1,532,287.4	62,114.3	-	75.5	
준공업지역	120,724.2	-	59,207.7	61,516.5	5.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1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일원	1,715,763.6	-
2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지구 (미니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용암리 일원	394,819.1	-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산업시설지구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계획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32	10,361	215,741.8	9	3,546	60,767.4	7	3,416	75,891.6	16	3,399	79,082.8
	1공구	15	7,124	164,228.1	8	2,308	46,504.3	4	2,467	52,854.6	3	2,349	64,869.2
	2공구	4	2,033	36,976.4	1	1,147	14,062.3	1	520	15,952.0	2	366	6,962.1
	3공구	13	1,204	14,537.3	-	91	200.8	2	429	7,085.0	11	684	7,251.5
대로	소계	5	4,314	108,169.1	1	802	1,319.7	1	1,027	37,988.3	3	2,485	68,861.1
	1공구	4	3,258	91,420.2	1	182	466.3	1	737	26,225.3	2	2,339	64,728.6
	2공구	1	965	16,548.1	-	529	652.6	-	290	11,763.0	1	146	4,132.5
	3공구	-	91	200.8	-	91	200.8	-	-	-	-	-	-
중로	소계	15	5,292	100,611.1	4	2,274	54,390.0	6	2,389	37,903.3	5	629	8,317.8
	1공구	7	3,396	67,750.2	3	1,656	40,980.3	3	1,730	26,629.3	1	10	140.6
	2공구	3	1,068	20,428.3	1	618	13,409.7	1	230	4,189.0	1	220	2,829.6
	3공구	5	828	12,432.6	-	-	-	2	429	7,085.0	3	399	5,347.6
소로	소계	12	755	6,961.6	4	470	5,057.7	-	-	-	8	285	1,903.9
	1공구	4	470	5,057.7	4	470	5,057.7	-	-	-	-	-	-
	2공구	-	-	-	-	-	-	-	-	-	-	-	-
	3공구	8	285	1,903.9	-	-	-	-	-	-	8	285	1,903.9

* 공구분할에 따라 구분되는 대로 1-1호선, 대로2-1호선은 1공구에 반영하여 1개소로 산정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802						
기정	대로	1	1	35~38	주간선	7,553 (802)	대로1-2	봉동읍 제내리 구역계	일반	과학산업 연구단지	전라북도고시 제135호 (78.5.22)	산업시설지구, 1공구(182m) 2공구(529m) 3공구(91m)
소 계						1,027						
기정	대로	2	1	34.5	주간선	1,027	중로1-3	대로1-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737m) 2공구(290m)
소 계						2,485						
기정	대로	3	1	27.5	보조간선	1,856	장구리 699도	대로2-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대로	3	2	27.5	보조간선	483	대로2-1	제내리 1291천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대로	3	3	25.5 ~29	집산도로	146	제내리 298-1대	제내리 314-2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
소 계						2,274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376	둔산리 1144도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997	중로1-1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2	집산도로	283	제내리 1289천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1	4	22	집산도로	618	제내리 255-2구	제내리 834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2공구
소 계						2,389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964	중로1-1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89	중로2-1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577	대로3-1	중로1-3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237	제내리 792답	제내리 370-7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72m) 3공구(165m)
기정	중로	2	8	19.5	국지도로	157	제내리 370-3답	제내리 370-7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2	9	16	국지도로	265	제내리 371-1답	제내리 300-1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소 계						629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0	장구리 684유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220	제내리 298-2대	제내리 263-4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290	제내리 350-8답	제내리 348-27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42	제내리 382-4대	제내리 385대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67	제내리 382-6답	제내리 832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소 계						47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67	장구리 649장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0	장구리 620장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0	장구리 616장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03	제내리 1239장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소 계						767						
기정	소로	2	68	8	국지도로	767	구암리 738-3도	소로1-27	일반		완주군고시 제2012-60호 (12.07.20)	지구 외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285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4	제내리 373전	제내리 372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41	제내리 348-78 전	제내리 348-71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30	제내리 371-2답	제내리 371-1답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66	제내리 350-8답	제내리 348-11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62	제내리 348-27전	제내리 348-13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30	제내리 303-8전	제내리 305-5대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12	제내리 310대	제내리 310대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30	제내리 산112답	제내리 348-12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18,912.7		
기정	주1	주차장	제내리 831-1답	2,247.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3공구
기정	주2	주차장	제내리 1240차	3,540.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3	주차장	장구리 633차	1,799.3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4	주차장	장구리 665차	722.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5	주차장	장구리 670차 일원	2,162.8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12	주차장	제내리 348-11전	2,100.2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3공구
기정	주13	주차장	제내리 315-2답	1,766.8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2공구
기정	주14	주차장	제내리 379-1답	4,572.9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2공구

○ 공간시설계획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13,503.8		
기정	소1	1호 소공원	소공원	제내리 1256공	3,942.7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2	2호 소공원	소공원	장구리 660공	1,167.8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3	3호 소공원	소공원	장구리 671공	4,400.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7	7호 소공원	소공원	제내리 370-7답	3,992.4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2공구

▪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제1호 소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942.7	613.0			
도로 및 광장		소 계		613.0	613.0			15.55%
		도로	전지역	330.0	330.0			
	가-1	중앙광장	부지 남동측	283.0	283.0			원형과교라1개소 평의자 6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3,329.7				84.45% 등의자 6개소 평의자 4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40	330				
소로	3	1	3.0	80	240	진입로	북측 출입구	중앙광장	
소로	3	2	1.5	60	90	진입로	남측 출입구	중앙광장	

㉠ 제2호 소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67.8	230.0			
도로 및 광장		소 계		190.0	190.0			19.70%
		도로	전지역	75.0	75.0			
	가-1	휴게광장	부지중앙	115.0	115.0			
조경 시설		소 계		40.0	40.0			
	나-1	화계	부지동측	24.0	24.0			
	나-2	사각파고라	부지중앙	16.0	16.0			
녹지		녹지	전지역	937.8				80.30%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8	75				
소로	3	1	3.0	12	36	진입로	북측 출입구	휴게광장	
소로	3	2	1.5	26	39	진입로	휴게광장	북측 출입구	

㉡ 제3호 소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4,400.9	759.0			
도로 및 광장		소 계		759.0	759.0			17.25%
		도로	전지역	478.0	478.0			
	가-1	휴게광장	부지중앙	281.0	281.0			사각파고라2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3,641.9				82.75% 등의자8개소 평의자4개소 체련단련시설5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24	478				
소로	3	1	5.0	36	169	진입로	남서측 출입구	휴게광장	
소로	3	2	3.0	20	57	진입로	휴게광장	남동측 출입구	
소로	3	3	1.5	118	177	산책로	소로3-1	소로3-2	
소로	3	4	1.5	50	75	산책로	소로3-2	소로3-1	

㉠ 제7호 소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992.4	495.0			
도로 및 광장		소 계		460.0	460.0			11.52%
		도로	전지역	203.0	203.0			11.52%
	가-1	진입광장	부지북동측	25.0	25.0			
	가-2	진입광장	부지남동측	92.0	92.0			
	가-3	진입광장	부지동측	57.0	57.0			
	가-4	진입광장	부지남측	36.0	36.0			
	가-5	진입광장	부지북서측	47.0	47.0			
운동시설		소계		35.0	35.0			0.88
	나-1	운동공간	부지중앙	35.0	35.0			체력단련시설 4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3,497.4				87.60% 등의자 10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01	203				
소로	3	1	2.0	39	78	진입로	북동측 출입구	남동측 출입구	
소로	3	2	2.0	62	125	진입로	동측 출입구	남측 출입구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 번 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53,440.5		
기정	연1	녹지	연결녹지	제내리 1245공	1,079.5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연2	녹지	연결녹지	장구리 687공 일원	27,784.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25,924.1㎡) 2공구 (1,860.3㎡)
기정	연3	녹지	연결녹지	제내리 1280공 일원	13,365.0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연4	녹지	연결녹지	장구리 619공 일원	3,050.7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연5	녹지	연결녹지	제내리 1284공 일원	8,160.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5,872.9㎡) 2공구 (2,288.0㎡)
소 계					15,094.0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장구리 산29임	9,172.2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2공구
기정	완3	녹지	완충녹지	장구리 682공 일원	5,921.8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 방재시설계획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k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4	석탑천	지방하천	봉동읍 제내리 584-1번지선	삼례읍 석전리우산천(지방) 합류점		8.85(2.95)	10~60	333,060(110,707.2)	완주군고시 제2012-60호(2012.7.20.)	333,060(110,707.2)

*()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연장, 면적임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29,250.8		
기정	저1	유수지	저류시설	제내리 1261유	11,073.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16.09.19)	1공구
기정	저2	유수지	저류시설	장구리 684유 일원	18,176.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16.09.19)	1공구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1) 산업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	산업1	37,628.6	-1	14,157.6	(2공구)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최소획지규모 1,650㎡)
			-2	23,471.0	
	산업2	73,503.0	-1	58,494.0	(1공구)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최소획지규모 1,650㎡)
			-2	15,009.0	
	산업4	29,886.1	-1	13,966.7	
			-2	15,919.4	
	산업6	80,825.3	-1	10,436.0	
			-2	11,041.2	
			-3	12,069.9	
			-4	47,278.2	
	산업7	106,006.6	-1	33,213.2	
			-2	53,960.7	
			-3	18,832.7	
			-4	18,009.7	
	산업8	93,200.9	-1	18,030.8	
			-2	14,537.0	
			-3	18,009.7	
			-4	42,623.4	
	산업9	96,054.8	-1	31,054.9	
			-2	64,999.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10	82,572.0	-1	12,250.7	
			-2	70,321.3	
	산업11	43,485.0	-1	35,507.2	
			-2	7,977.8	
	산업12	73,293.0	-1-1	9,929.7	
			-1-2	2,919.1	
			-2	11,394.1	
			-3	10,115.1	
			-4-1	6,610.5	
			-4-2	3,283.0	
			-4-3	3,154.1	
			-5	11,392.0	
			-6	14,495.4	
	산업13	44,149.3	-1	5,478.0	
			-2	6,605.1	
			-3-2	9,427.9	
			-3-3	5,447.1	
			-4	17,191.2	

2) 연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	연구1	59,729.1	-1	5,797.9	(1공구)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최소획지규모 1,650m ²)
			-2	6,644.9	
			-3	6,534.4	
			-4	4,330.1	
			-5	4,532.0	
			-6	8,282.3	
			-7	5,525.0	
			-8	6,953.6	
			-9	11,128.9	
	연구2	40,489.9	-1	6,931.1	
			-2	6,858.9	
			-3	14,537.7	
			-4	12,162.2	

3) 물류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	물류1	142,335.6	-1	142,335.6	(1공구)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최소획지규모 1,650m ²)
	물류2	145,816.2	-1	145,816.2	
	물류3	41,467.8	-1	30,577.4	
			-2	10,890.4	

○ 지원시설용지

1) 지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확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	지원1	9,244.7	-1	1,593.1	(3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137.7	
			-3	1,411.2	
			-4	1,144.9	
			-5	1,697.9	
			-6	1,259.9	
	지원2	2,131.0	-1	1,065.6	(1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1,065.4	
	지원3	1,364.1	-1	682.1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682.0	
	지원4	6,432.7	-1	1,233.9	(3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1,223.1	
			-3	1,916.5	
			-4	644.6	
			-5	747.5	
			-6	667.1	
	지원5	10,550.6	-1	1,668.0	(3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993.3	
			-3	1,010.1	
			-4	1,006.9	
			-5	1,012.5	
			-6	1,046.8	
			-7	1,045.3	
			-8	984.9	
			-9	924.4	
			-10	858.4	
	지원6	6,603.3	-1	659.7	(3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596.2	
			-3	619.5	
			-4	588.8	
			-5	550.9	
			-6	542.0	
			-7	483.8	
			-8	484.1	
			-9	472.1	
			-10	529.7	
			-11	544.4	
			-12	532.1	
	지원7	9,800.3	-1	719.7	(3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657.0	
			-3	660.6	
			-4	648.4	
			-5	710.2	
			-6	708.7	
			-7	705.8	
			-8	586.9	
			-9	577.6	
			-10	579.3	
			-11	571.5	
			-12	621.2	
			-13	658.6	
			-14	653.7	
			-15	741.1	
	지원8	11,157.7	-1	5,880.3	(2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5,277.4	
	지원9	3,465.6	-1	773.1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931.2	
			-3	940.8	
			-4	820.5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1) 산업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1~2 4~13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교육원, 마.연구소 (단, 주요 유치업종계획에 따른 부수적 용도로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건축물의 주방향은 도로 전면부 또는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건축선	○ 대로 3류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중로 1류 이하 도로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전면도로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은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강조색 ○ 제한없음

2) 연구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1 ~2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주방향은 도로 전면부 또는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건축선	○ 대로 3류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중로 1류 이하 도로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전면도로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은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강조색 ○ 제한없음

3) 물류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물류 1~3BL	용 도	○ 허용용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물류시설 및 7호의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2항 1호의 부대시설 및 2호의 편익시설 - 다만, 완주군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주방향은 도로 전면부 또는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건축선	○ 대로 3류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전면도로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은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강조색 ○ 제한없음

○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지원 1~9BL	용 도	○ 허용용도는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지원2~3,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지원1,4~9, 준공업지역)
		용적률	○ 350% 이하 (지원2~3, 일반공업지역) ○ 400% 이하 (지원1,4~9, 준공업지역)
		높 이	○ 7층 이하 (단, 지원8는 10층 이하)
		건축선	○ 대로3-1호선변에 건축한계선 1.5m 지정(지원2,3) ○ 건축한계선 2m 지정 (지원1, 4~7, 9) ○ 건축한계선 3m 지정 (지원8)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한함)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장방형으로 길고, 입면적이 넓은 경우, 과도한 건물메스로 인한 경관차폐, 바람길 차단,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장방형 건축물은 25m 이내로 경관형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적인 외벽선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돌출, 재질 변화, 다양한 창호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입면 분절을 권장한다. - 석담천, 소공원 등 자연경관자원에 인접한 건축물의 경우 휴먼스케일로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재질(목재 및 석재의 재질표현)등의 소재를 가로변 또는 중·원경에서 가시되는 상층부 부분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원용지 6,7블록 내 보행자도로에 접한 필지는 1층 업소에 한해 차양막 설치를 권장한다. 차양막 설치시 한 건축물 내 차양막은 같은 형태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차양막의 색상은 인접 업소의 색채와 유사하게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전면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 -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굴뚝, 환기설비,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건축물의 전면부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도시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옥상면적의 50% 이상)를 권장한다.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높이차에 의한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구분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				
		지원 2~3	지원4	지원 1,5,9	지원 6~7	지원8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	○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6. 종교시설(불안당 제외)	×	×	○	○	×
	7. 판매시설 (지원2,3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	○	○	○	○	○
	9.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	○	○	○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	○	×	●
	11.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	×	○	○
	13.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	○	○	○
	14. 업무시설	○	○	●	○	○
	15.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	○	×	×	●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	×	×	×	×
	20.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마목 매매장	○	○	○	×	×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제외), 이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 ● : 권장용도 / ○ : 허용용도 / × : 불허용도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2 조성기준' 준수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 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
		옥외광고물	○ '별표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2) 공통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	야간경관	○ '별표5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기타시설물 경관	○ 도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19)을 준수

②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계획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37	6,389	93,940.6	11	3,087	54,952.0	3	406	7,014.0	23	2,896	31,974.6
	1공구	29	5,005	75,919.8	10	2,395	44,944.2	3	406	7,014.0	16	2,204	23,961.6
	2공구	8	1,384	18,020.8	1	692	10,007.8	-	-	-	7	692	8,013.0
대로	소계	1	106	433.6	1	106	433.6	-	-	-	-	-	-
	1공구	-	-	-	-	-	-	-	-	-	-	-	-
	2공구	1	106	433.6	1	106	433.6	-	-	-	-	-	-
중로	소계	16	4,056	72,028.1	3	1,504	38,351.7	3	406	7,014.0	10	2,146	26,662.4
	1공구	13	3,237	58,794.6	3	1,305	32,697.7	3	406	7,014.0	7	1,526	19,082.9
	2공구	3	819	13,233.5	-	199	5,654.0	-	-	-	3	620	7,579.5
소로	소계	20	2,227	21,478.9	7	1,477	16,166.7	-	-	-	13	750	5,312.2
	1공구	16	1,768	17,125.2	7	1,090	12,246.5	-	-	-	9	678	4,878.7
	2공구	4	459	4,353.7	-	387	3,920.2	-	-	-	4	72	433.5

* 공구분할에 따라 구분되는 중로1-5호선, 중로 3-9호선, 소로1-10호선, 소로1-11호선은 1공구에 반영하여 1개소로 산정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106						
기정	대로	1	1	35~40	주간선	7,553 (106)	대로1-2	봉동읍 제내리 구역계	일반	과학산업 연구단지	전고 제135호 (78.5.22)	()안은 지원시설지구, 2공구
소 계						1,504						
기정	중로	1	5	22~24	보조간선	1,032	둔산리 산70-12입	대로1-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833m) 2공구(199m)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363	소로3-1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1	7	21	집산도로	109	중로1-5	중로3-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406						
기정	중로	2	4	18	집산도로	237	중로3-4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68	중로2-4	중로3-7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01	중로1-5	소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소 계						2,146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284	소로3-1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70	중로1-5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109	중로1-5	중로3-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116	중로3-4	중로2-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456	중로3-4	중로2-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69	중로2-5	중로3-7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9	12	국지도로	571	중로3-3	둔산리 223-7잡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22m) 2공구(549m)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28	용암리 산39-4임	용암리 산39-4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3	14	12	국지도로	22	용암리 산39-4임	용암리 산39-4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21	둔산리 산68-4임	둔산리 산68-4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소 계						1,477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95	소로3-1	중로2-6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92	소로1-7	중로3-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94	중로3-4	소로1-6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78	중로3-4	중로3-7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13	중로3-4	중로3-6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91	중로3-4	둔산리 산68-2입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18m), 2공구(73m)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14	소로1-10	소로1-10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소 계						750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71	중로3-3	소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24	중로1-5	소로1-6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33	소로1-6	소로1-7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33	소로1-7	중로3-4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36	중로3-7	소로1-8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18	소로1-8	둔산리 1013공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7	4	특수도로	20	중로3-7	둔산리 1141공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8	4	특수도로	23	중로3-7	중로1-5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20	중로3-4	소로1-6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18	4	특수도로	10	둔산리 322-50전	둔산리 322-50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소로	3	19	4	특수도로	25	둔산리 223-7잡	둔산리 223-7잡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소로	3	20	4	특수도로	25	둔산리 223-7잡	둔산리 223-7잡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소로	3	21	4	특수도로	12	둔산리 322-50전	둔산리 산70입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6,513.0		
기정	주6	주차장	둔산리 957차	1,102.3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7	주차장	둔산리 999차	1,069.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8	주차장	둔산리 1052차	1,243.3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9	주차장	둔산리 1079차	1,026.2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10	주차장	둔산리 산68-2임	1,083.1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2공구
기정	주11	주차장	용암리 산39-4임	988.2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2공구

○ 공간시설계획

1)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봉동읍 둔산리 1142공 일원	81,317 (1,390.8)	전 · 고제215호 (86.12.15)	봉동읍, 1공구 (488.5m ²) 2공구 (902.3m ²)

* ()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면적임

2)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19,444.7		
기정	근공1	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둔산리 1045공	11,678.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4	4호 소공원	소공원	둔산리 1012공	964.6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5	5호 소공원	소공원	용암리 918공 일원	538.3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1공구
기정	소6	6호 소공원	소공원	둔산리 221-11전	6,263.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2공구

▪ 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㉔ 제1호 근린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678.4	4,066.0			
도로 및 광장		소계		3,548.0	3,548.0			30.38%
		도로	전지역	2,099.0	2,099.0			평의자4개소
	가-1	진입과장2	부지북동측	478.0	478.0			등의자4개소
	가-2	휴게광장1	부지북측	307.0	307.0			사각파고라2개소 반원형파고라1개소
	가-3	중앙광장	부지중앙	346.0	346.0			등의자 6개소, 평의자 2개소
	가-4	휴게광장2	부지중앙	76.0	76.0			육각정자1개소 등의자4개소
	가-5	진입광장3	부지남측	242.0	242.0			
운동시설		소계		98.0	98.0			0.84%
	나-1	체력단련장	부지중앙	98.0	98.0			체력단련시설 5개소
유희시설		소계		370.0	370.0			3.17%
	다-1	어린이놀이터	부지중앙	370.0	370.0			
편의시설		소계		50.0	50.0			0.43%
	라-1	화장실	부지중앙	50.0	50.0			
녹지		녹지	전지역	7,612.4				65.18% 등의자 6개소 평의자 8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515	2,099				
소로	3	1	5	131	680	산책로	진입광장1	중앙광장	
소로	3	2	5	15	75	진입로	진입광장2	중앙광장	
소로	3	3	3	3	9	진입로	소로3-2	화장실	
소로	3	4	5	177	887	산책로	중앙광장	진입광장3	
소로	3	5	3	7	21	진입로	동측 출입구	소로3-4	
소로	3	6	3	9	28	진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7	1.5	84	126	산책로	소로3-4	소로3-4	
소로	3	8	1.2	12	17	산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9	1.2	9	12	산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10	1.2	9	12	산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11	3	29	86	산책로	보도	도로	
소로	3	12	4	18	76	산책로	보도	도로	
소로	3	13	3	12	70	산책로	소로3-4	도로	

㉠ 제4호 소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64.6	192.0			
도로 및 광장		소계		192.0	192.0			19.90%
		도로	전지역	176.0	176.0			
	가-1	휴게광장	부지중앙	16.0	16.0			사각파고라1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772.6				80.10% 등의자2개소 평의자6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95	176				
소로	3	1	2.0	56	111	산책로	북서측 출입구	남측 출입구	
소로	3	2	1.5	32	52	산책로	소로3-1	소로3-1	
소로	3	3	2.0	7	13	진입로	북동측 출입구	소로3-2	

㉡ 제5호 소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538.3	74.0			
도로 및 광장		소계		74.0	74.0			13.75%
		도로	전지역	74.0	74.0			
교양	1	고인돌						1개소(현존)
	2	고인돌						1개소(현존)
녹지		녹지	전지역	464.3				86.25%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1	74				
소로	3	1	4	12	52	진입로	외부	외부	
소로	3	2	2.5	9	22	진입로	외부	외부	

㉠ 제6호 소공원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263.4	1,043.0			
도로 및 광장		소계		1,043.0	1,043.0			16.65%
	-	도로	전지역	699.0	699.0			평의자 8개소
	가-1	휴게광장1	부지중앙	49.0	49.0			육각정자1개소
	가-2	진입광장1	부지북서측	105.0	105.0			
	가-3	휴게광장2	부지중앙	50.0	50.0			육각정자1개소
	가-4	진입광장2	부지북서측	56.0	56.0			
	가-5	진입광장3	부지북서측	70.0	70.0			
	가-6	진입광장4	부지북서측	14.0	14.0			
녹지		녹지	전지역	5,220.4				83.35% 등의자4개소 평의자8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34	699				
소로	3	1	3	65	194	산책로	외부	외부	
소로	3	2	5	49	265	산책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1	
소로	3	3	2	72	144	산책로	진입광장3	진입광장2	
소로	3	4	2	3	7	산책로	외부	소로3-3	
소로	3	5	2	45	89	산책로	진입광장4	완충녹지	

3)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1,925.1		
기정	연6	녹지	연결녹지	둔산리 1130공	1,925.1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소 계					17,848.3		
기정	완4	녹지	완충녹지	둔산리 1140공	5,860.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완5	녹지	완충녹지	둔산리 1141공	2,036.3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완6	녹지	완충녹지	둔산리 산69임	9,951.1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2공구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5,767.4		
기정	지1	공공공지	둔산리 1046공 일원	1,890.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지2	공공공지	둔산리 1013공 일원	1,356.0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지3	공공공지	둔산리 1127공 일원	2,521.0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소 계					30,553.7		
기정	학1	학교	중학교	둔산리 1125학	15,423.8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학2	학교	초등학교	둔산리 1126학	15,129.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1	공공청사	공공청사	둔산리 1055대	2,219.2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주거용지

1) 단독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	단독1	2,089.5	-1	255.2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65.0	
			-3	265.0	
			-4	249.7	
			-5	266.4	
			-6	265.2	
			-7	265.0	
			-8	258.0	
	단독2	2,108.8	-1	258.6	
			-2	265.5	
			-3	265.6	
			-4	261.9	
			-5	261.2	
			-6	267.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확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단독3	1,187.5	-7	267.6	
			-8	260.6	
			-1	295.9	
			-2	295.5	
			-3	298.1	
			-4	298.0	
	단독4	3,468.2	-1	281.7	
			-2	287.0	
			-3	287.1	
			-4	287.1	
			-5	309.6	
			-6	309.8	
			-7	309.9	
			-8	307.4	
			-9	268.2	
			-10	269.1	
			-11	268.8	
			-12	282.5	
	단독5	1,278.2	-1	251.0	
			-2	257.1	
			-3	256.9	
			-4	256.7	
			-5	256.5	
	단독6	4,586.7	-1	282.1	
			-2	287.2	
			-3	287.3	
			-4	287.4	
			-5	287.6	
			-6	287.8	
			-7	287.8	
			-8	283.1	
			-9	282.5	
			-10	288.7	
			-11	288.8	
			-12	288.8	
			-13	289.0	
지원	단독7	5,178.9	-14	289.0	(1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15	289.0	
			-16	289.0	
			-17	280.6	
			-1	250.4	
			-2	256.7	
			-3	256.8	
			-4	274.2	
			-5	273.8	
			-6	257.0	
			-7	257.1	
			-8	257.1	
			-9	257.2	
			-10	251.4	
			-11	251.6	
			-12	256.4	
			-13	256.4	
			-14	256.4	
			-15	256.4	
			-16	272.9	
	단독8	5,214.7	-17	273.8	
			-18	256.3	
			-19	256.5	
			-20	250.5	
			-1	249.2	
			-2	255.5	
			-3	255.7	
			-4	255.9	
			-5	256.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확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6	273.8	
			-7	272.8	
			-8	256.7	
			-9	256.5	
			-10	274.0	
			-11	273.5	
			-12	256.4	
			-13	256.5	
			-14	272.9	
			-15	273.3	
			-16	256.2	
			-17	256.3	
			-18	256.4	
			-19	256.4	
			-20	250.6	
	단독9	662.3	-1	325.5	
	단독10	1,386.2	-2	336.8	
			-1	268.3	
			-2	267.9	
			-3	253.7	
			-4	294.2	
	단독11	1,368.9	-5	302.1	
			-1	295.8	(2공구) 확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확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확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64.3	
			-3	273.9	
			-4	270.2	
			-5	264.7	
	단독12	1,534.2	-1	257.8	
			-2	264.9	
			-3	230.1	
			-4	276.6	
			-5	256.0	
			-6	248.8	

2) 공동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	공동1	37,041.8	-1	37,041.8	(1공구) 획지분할 불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공동2	30,449.1	-1	30,449.1	
	공동3	33,742.5	-1	33,742.5	
	공동4	36,717.7	-1	36,717.7	

3)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	근린1	2,147.7	-1	559.2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497.8	
			-3	520.9	
			-4	569.8	
	근린2	2,074.4	-1	484.0	
			-2	494.4	
			-3	506.4	
			-4	589.6	
	근린3	972.9	-1	972.9	
	근린4	4,973.4	-1	570.8	
			-2	555.1	
			-3	494.5	
			-4	499.0	
			-5	601.7	
			-6	597.5	
			-7	597.1	
			-8	599.4	
지원	근린5	2,241.1	-1	480.9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623.3	
			-3	592.4	
			-4	544.5	
	근린6	3,187.0	-1	894.8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754.6	
			-3	501.2	
			-4	518.0	
	근린7	4,092.1	-5	518.4	(2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1	685.4	
			-2	522.0	
			-3	513.3	
			-4	517.2	
			-5	529.0	
			-6	538.7	
			-7	393.2	
			-8	393.3	

4) 준주거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	준1	2,254.8	-1	751.5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750.9	
			-3	752.4	
	준2	6,872.8	-1	749.1	
			-2	748.5	
			-3	798.0	
			-4	1,024.5	
			-5	536.4	
			-6	471.8	
			-7	461.1	
			-8	479.9	
			-9	445.5	
			-10	386.6	
			-11	384.4	
			-12	387.0	
	준3	2,417.8	-1	413.0	(2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420.1	
			-3	420.2	
			-4	454.3	
			-5	283.7	
	준4	1,366.1	-6	426.5	
			-1	452.6	
			-2	458.9	
	준5	2,022.5	-3	454.6	
			-1	695.2	
	준6	4,018.0	-2	658.5	
			-3	668.8	
			-1	656.1	
			-2	675.3	
			-3	511.2	
			-4	556.5	
			-5	565.7	
			-6	452.9	
지원	준7	3,291.9	-7	600.3	
			-1	649.8	
			-2	1,019.4	
			-3	737.2	
	준8	2,896.2	-4	885.5	
			-1	723.9	
			-2	720.2	
			-3	710.9	
			-4	741.2	

○ 지원시설용지

1) 어린이집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	어린이1	1,184.9	어린이1	1,184.9	

2) 종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	종1	1,187.5	종1	1,187.5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조서

○ 주거용지

1) 단독주택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단독1~ 12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1.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진관·표구점, 자목 일반음식점, 카목 학원(500㎡ 미만), 타목 독서실·기원, 하목 일반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여 허용(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층에 허용)하고 건축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
		획지당세대수	○ 3가구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 권장
		건축선	○ 폭원 10m인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0.5m 지정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건축물의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상층의 외벽이나 기초 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너비 12m이상의 도로와 접한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 및 옥상 -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혼합방식 중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경사지붕은 박공형식으로 하며 지붕구배는 가급적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한다. - 평지붕은 옥상녹화(평지붕의 50% 이상)를 하도록 한다.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방풍·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계단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며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색채 및 외관	○ 건물 외벽 및 지붕 색상은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무채색 등 저채도를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공동1~4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 공동3~4BL의 초등학교 남측 도로변 중층배치구간은 10층 이하 (단, 학교 일조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층수완화 가능)
		주택유형	○ 공동1~4BL : 85㎡이하(분양주택)
		배 치	○ 주동의 배치계획시 ㄷ자형, H자형, ㄱ자형 등 폐쇄형 배치는 지양 ○ 세대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세대간 거실창호가 근접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같은 동 및 인접동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동2BL의 경우 서측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상을 이격하여 아파트 주동을 배치 하고 당해 10m 이내 구간은 소음저감을 위한 완충공간(방음벽 및 방음독)으로 조성한다.
		건축선	○ 중로 1-5호선, 중로 1-6호선, 소로1-5호선, 소로 3-1호선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주동의 세대당 평균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 6호연립, 그 이상인 경우 4호 연립 이하로 계획 ○ 지붕 및 옥상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방충·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계단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며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색채 및 외관	○ 건물 외벽 및 지붕 색상은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무채색 등 저채도를 권장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근린1~ 7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9.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격리병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11.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 관련 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14. 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건축선	○ 중로 1-5호선변 1.0m 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공지에 면한 부분에 건축지정선 1.0m를 지정하고 해당 획지의 지정선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접하도록 함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전면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 -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굴뚝, 환기설비,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건축물의 전면부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도시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옥상면적의 50% 이상)를 권장한다.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높이차에 의한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4) 준주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준1~ 8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장 의사,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공연장(500㎡이상), 나목 전시장 6.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7.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1천㎡미만), 다목 상점(1천㎡미만) 9.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격리병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 세차장, 바목 정비공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8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건축선	○ 중로1-5호선변에 건축한계선 1.5m 지정 ○ 공공공지에 면한 부분에 건축지정선 1.0m를 지정하고 해당 획지의 지정선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접하도록 함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전면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 -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굴뚝, 환기설비,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건축물의 전면부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도시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옥상면적의 50% 이상)를 권장한다.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높이차에 의한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지원시설용지

1) 어린이집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어린이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11.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2) 종교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종1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500㎡ 미만) 및 그 부대시설 6. 종교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 생략

1) 지원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2 조성기준' 준수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

2) 주거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2 조성기준' 준수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내에 설치 ○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변경 가능
		단지내 차량동선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주차대수의 40% 이하로 설치
		단지내 포장	○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지원	-	단지내 조경	○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 ○ 녹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 수로서 교목류를 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물타리의 설치를 권장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 하도록 설계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

3)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대지내 공지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의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쉼터를 형성하도록 권장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수
		완충녹지	지방도799호선변 완충녹지6은 대기 및 악취저감을 위해 ‘별표 4’ 환경정화수종 식재시 권장기준에 따라 식재

4) 공통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옥외광고물	‘별표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야간경관	‘별표5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기타시설물 경관	도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19)을 준수

<별표 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본 대상지내 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 및 주거환경의 보호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당해 행정구역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단, 본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 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구성 요소	수량	○ 점포당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단, 2개이상 설치 시 서로 다른 유형(벽면이용간판, 지주형, 돌출형 등)의 간판을 사용토록 한다.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곡각지점은 유형 규제 예외)
	재질	○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자연환경, 역사자원과 인접한 경우에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적용한다.
	색채	○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이나 지나치게 순도 높은 원색사용은 지양하며,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조화로운 색채사용을 권장한다. ○ 바탕색에는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명	○ 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을 금한다.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을 권장한다.
	표기내용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기할 수 없다.(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 지양) ○ 표기내용은 간판바탕면적의 2/3 이내로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한다.
광고물 종류	벽면이용간판	○ 업소당 1개 설치하며, 2층 이하에 표시를 권장한다.(다만, 3층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가능) ○ 도로의 곡각지점의 접한 업소로서 벽면이용간판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동일층의 벽면이용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가로크기는 업소 전면폭의 80%이내,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간판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건물의 여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 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벽면이용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한다.
	돌출간판	○ 업소당 1개로 한하며, 설치위치는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3층 이하로 한다. ○ 2개 이상 설치시 간판의 돌출 폭을 일치시키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로 한다.
	지주이용간판	○ 5층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시내용 등을 통일한다. ○ 업소당 1개 설치하며, 건물별 1개 설치한다. ○ 표시내용은 브랜드명, 상호명과 같은 핵심 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며, 업소 단독 지주형 설치를 금하고, 입주 업소수를 감안하여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다.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1면 3㎡ 이내로 한다. ○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고,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옥외광고물	○ 옥상간판의 표시 및 설치를 금한다. ○ 업소 개별 현수막의 표시는 지양한다. ○ 차양막은 1층에 한하며, 돌출폭은 1.2m 이내로 한다.

<별표 2>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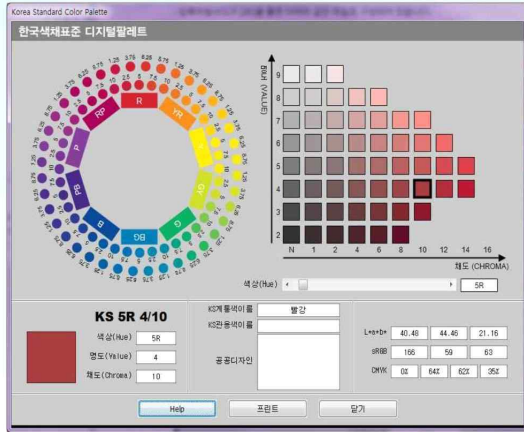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등의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보행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용지 내 보행자도로의 전면공지의 경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영업을 위한 시설(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업을 위한 시설은 이동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포장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색채계획의 세부기준(변경없음)

색채표현의 기준

- 한국색채표준 디지털팔레트 (국가기술표준원; KATS)

※ 맨셀표색계의 10색상을 기본색으로 사용



용어의 정의

- 주조색 : 전체 면적의 60% 이상, 1~2개 색 사용
- 보조색 : 전체 면적의 30% 이상, 4~5개 색 사용
- 강조색 : 전체 면적의 10% 미만, 1~2개 색 사용
- 원 색 : 맨셀표색계 10색상의 기본색
- 자연색 : 어떤 사물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빛깔, 인공적인 색채를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빛깔.
- 따뜻한 색 : Red(빨강) - Yellow Red(주황) - Yellow(노랑)
* 산업시설의 차갑고 삭막한 이미지 완화
- 차가운 색 : Green Blue(조록) - Blue(파랑) - Purple Blue(남색)
- 저채도 : 채도 4 이하
* 산업단지내 질서있는 경관 연출, 주변과 조화를 도모
- 계통색(명) : 색상 또는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표현하는 수식어
- 무채색 계통 : 채도 0 (흰색, 회색, 검은색)
* 산업단지내 질서있는 경관 연출, 주변과 조화를 도모
- 밝은색 계통 : 명도 6 이상
* 대규모의 건축물(시설물)이 주는 위압감, 차폐감을 저감
- 어두운색 계통 : 명도 5 이하

<별표 4> 환경정화수종 식재시 권장기준(변경없음)

구 분		공장, 도로변과 같이 오염농도가 높은 곳에서 알맞은 수종	주택가 등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알맞은 수종
전국	교목	은행나무, 튜립나무, 양버즘나무, 은단풍나무, 가죽나무(가죽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참느릅나무(8종)	느티나무, 팽나무, 오동나무, 배롱나무, 밤나무, 백목련, 뽕나무, 서어나무, 칠엽수, 회화나무, 감나무, 패죽나무, 층층나무, 자두나무(자도나무)(14종)
	관목	무궁화, 개나리, 낙상홍, 산수우(5종)	매화나무(매실나무), 박태기, 자목련(3종)
남부 지방	교목	소귀나무, 가시나무류, 태산목, 녹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아왜나무(7종)	
	관목	황광나무, 사철나무, 광나무, 협죽도, 차나무, 팔손이, 철쭉류(7종)	

<별표 5>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주변 시설 및 환경을 고려한 조도 및 적절한 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 자연의 빛에 순응하고, 빛 공해가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인 야간 경관 연출을 도모한다. ○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야간경관 형성과 이용자의 심리적 만족감 증대 및 시설물이용시 인지도를 제공한다. ○ 도로,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의 옥외조명은 과도하지 않고 절제된 빛을 이용하여 광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권장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법령을 따르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이 해당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해당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에 따른다.																												
산업, 주거, 지원 공간	○ 인위적 조명 연출을 최소화 및 휴식 보호기능을 높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 안정적이 편안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조명의 색온도는 3,000~3,200k, 조도는 5~60 lux 범위내 설치를 권장한다. ○ 고층부 눈부심 방지 위해 CUT-OFF TYPE의 보안 등을 설치한다.																												
도로	○ 모든 도로(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포함)의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 (KSA3701)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며, LED 조명을 사용할 경우 LED 가로 등 및 보안등 기구 기준(KSC 7658)을 준용한다.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시설 및 주도로 : 충분한 조도의 가로등 배치 - 시설 진입도로 : 활동성을 고려한 하향 가로등 배치 - 산책로, 보행동선 : 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정원등 배치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색온도 계획</th><th>조도계획</th><th>휘도 계획</th><th>비고</th></tr><tr><td colspan="2">주요 진출입구간</td><td>3,200~3,500 k</td><td>10~100 lux</td><td>-</td><td>명확함, 활발함</td></tr><tr><td rowspan="3">도로</td><td>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td><td>3,200~3,500 k</td><td>-</td><td>1 cd/m² 이상</td><td>-</td></tr><tr><td>집산도로</td><td>3,000~3,200 k</td><td>-</td><td>0.75 cd/m² 이상</td><td>-</td></tr><tr><td>국지도로, 보행자도로</td><td>2,500~3,000 k</td><td>-</td><td>0.75 cd/m² 이상</td><td>-</td></tr></table> ○ 보행자로 및 산책로에는 풋라이트 조명을 이용해 장애물을 쉽게 인지시켜 안정적인 보행유도가 되도록 한다. ○ 셉티드(CPTED :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개념을 도입하여 불가피한 사각지대는 CCTV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조명을 배치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구 분		색온도 계획	조도계획	휘도 계획	비고	주요 진출입구간		3,200~3,500 k	10~100 lux	-	명확함, 활발함	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3,200~3,500 k	-	1 cd/m ² 이상	-	집산도로	3,000~3,200 k	-	0.75 cd/m ² 이상	-	국지도로, 보행자도로	2,500~3,000 k	-	0.75 cd/m ² 이상	-
구 분		색온도 계획	조도계획	휘도 계획	비고																								
주요 진출입구간		3,200~3,500 k	10~100 lux	-	명확함, 활발함																								
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3,200~3,500 k	-	1 cd/m ² 이상	-																								
	집산도로	3,000~3,200 k	-	0.75 cd/m ² 이상	-																								
	국지도로, 보행자도로	2,500~3,000 k	-	0.75 cd/m ² 이상	-																								
녹지공간	○ 주동선에는 조도 확보용 조명연출을 적용하여 안전도를 높인다. ○ 차분하고 정적인 연출을 위해 조명의 색온도는 2,500~3,000k, 조도는 3~30 lux 범위내 설치를 권장한다. ○ 식생경관을 위해 과도한 조명자제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 밝기는 확보를 통해 주변지역에 빛공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Ⅲ.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 최 충 식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166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 설치 공사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외로 연결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 개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사업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23-3번지 일원	218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13-6번지	171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3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산17-24번지 일원	331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53-19번지 일원	177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5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58-1번지 일원	122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89-32번지 일원	8,762	지방도 799호와 인접한 도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부 포장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방법 : 민·관 합동개발(변경없음)
- 시행기간 : (기정)승인고시일 ~ 2024년 6월 30일 (변경)승인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관련도서는 완주군청(미래전략담당관 ☎ 063-29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33호

완주 송광사 금강문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해제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19일

1. 고 시 명 : 완주 송광사 금강문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해제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완주 송광사 금강문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1999.7.9. 지정)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
- 수량 : 1동
-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팔작지붕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송광사(완주군)
- 지정해제 사유
 -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 지정에 따른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해제

3. 지정해제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7 / 전송 : 063-280-2539

나. 완주군청 문화역사과

- 주소: (우)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전화 : 063-290-2096 / 전송 : 063-290-205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고시 제2024-234호

광활3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문

광활3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7월 19일

1. 사 업 명 : 광활3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 김제시 광활면, 진봉면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경지 침수저감,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165.3ha
5. 사 업 개 요
 - 평 야 부 : 배수로 5조 L=6,930m(개거 및 호안블럭)
 - 광활1지선 : 6.0×1.5, L=710m [개거]
 - 춘하지선 : 5.0×1.5, L=1,530m [개거]
 - 광활2지선: 5.0×1.5, L=1,330m [개거]
 - 구복지선 : 26.0×2.5, L=1,350m [호안블록]
 - 확장지선 : 28.0×3.0, L=2,010m [호안블록]
6. 사업 기간 : 2023년 ~ 2029년(5개년)
7. 총 사업비 : 17,97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063-540-1188)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광활 읍포	1901- 20	답	3,151. 7	285.0	정동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62				
2	광활 읍포	1901- 19	답	4,115. 8	375.0	정동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62				
3	광활 읍포	1901- 18	답	4,115. 3	390.0	김명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9, 108동 1602호 (삼천동1가, 세창짜임아파 트)				
4	광활 읍포	1901- 17	답	4,061. 3	393.0	곽정숙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72-27				
5	광활 읍포	1901- 16	답	4,030. 4	396.0	정순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48, 203동 704호 (나운동, 롯데3차 아파트)				
6	광활 읍포	1901- 15	답	4,057. 7	400.0	최귀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쑤정이3길 28-1(진북동)				
7	광활 읍포	1901- 14	답	4,031. 3	392.0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8	광활포	1901-13	답	3,954.8	387.0	기민석	전라북도 김제시 효자로 114-2(신평동)				
9	광활포	1901-12	답	4,064.8	393.0	김순례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044-4				
10	광활포	1901-11	답	4,046.7	397.0	최규수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10길 126				
11	광활포	1901-10	답	4,102.8	411.0	최규수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10길 126				
12	광활포	1901-9	답	3,953.2	393.0	최봉언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10길 49-9				
13	광활포	1901-8	답	4,022.3	400.0	최현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10길 49-9				
14	광활포	1901-7	답	4,082.2	408.0	정관균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11길 28				
15	광활포	1901-6	답	4,106.1	410.0	정동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62				
16	광활포	1901-5	답	3,961.5	394.0	강조운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128-16, 7층 713호(검산동, 검산시티타워 14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7	광활포	1901-4	답	4,078.9	402.0	최정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36-37				
18	광활포	1901-3	답	4,021.7	394.0	이기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45, 101동 601호 (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 트)				
19	광활포	1901-2	답	4,129.9	411.0	김점순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36-55				
20	광활포	1901-1	답	2,337.5	253.0	정동기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11길 15				
21	광활창제	1380-13	답	2,054.4	118.0	임영용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591-8				
22	광활창제	1380-12	답	2,979.3	185.0	김증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26번길 10, 113동 601호(보라동 민속마을쌍용 아파트)				
23	광활창제	1380-11	답	4,195.2	249.0	김오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11번길 40-17				
24	광활창제	1380-10	답	4,195.2	254.0	변재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3길 13, 602호(문정동, 누리안시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5	광활 창제	1380- 9	답	4,225. 8	262.0	양민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1길 44-5				
26	광활 창제	1380- 8	답	4,084. 1	248.0	양민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1길 44-5				
27	광활 창제	1380- 7	답	4,193. 1	255.0	양민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1길 44-5				
28	광활 창제	1380- 6	답	4,138. 3	243.0	김지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율천로8번길 7-6				
29	광활 창제	1380- 5	답	4,104. 0	239.0	김오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11번길 40-17				
30	광활 창제	1380- 4	답	4,082. 3	235.0	김인철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650-3				
31	광활 창제	1380- 3	답	4,198. 2	237.0	최복례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603-14				
32	광활 창제	1380- 2	답	4,155. 7	228.0	양민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1길 44-5				
33	광활 창제	1380- 1	답	3,983. 7	108.0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34	광활 창제	528-1	대	139.0	139.0	박영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422				
34-1	광활 창제	1063-78	구	55.0	39.6	국(기획재정부)					
34-2	광활 창제	1071-2	도	24,942.0	87.6	국(건교부)					
35	광활 창제	1369-8	답	4,928.7	321.0	김영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650-23				
36	광활 창제	1369-7	답	4,279.3	280.0	박영심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옥포2길 135				
37	광활 창제	1369-6	답	4,400.1	284.0	박영심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옥포2길 135				
38	광활 창제	1369-5	답	4,223.1	266.0	진영환	전라북도 김제시 승암길 23-11, 104동 201호(검산동 제일오투그란 데 타운하우스)				
						경은선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650-13				
39	광활 창제	1369-3	답	4,362.1	277.0	고정기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650-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40	광활 창제	1369- 2	답	4,302. 9	266.0	유성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 75				
41	광활 창제	1369- 1	답	4,251. 8	266.0	김종태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지평선로 850				
41-1	광활 창제	489-1	도	2,472. 0	181.0	전라북 도					
42	광활 창제	1358- 8	답	1,880. 4	126.0	박문성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 402동 201호(효자동 2가,데시앙아 이린)				
43	광활 창제	1358- 7	답	4,310. 6	294.0	강용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50, 101동 704호 (우아동3가, e편한세상)				
44	광활 창제	1358- 6	답	4,354. 4	298.0	서경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 75 (용현동)				
						서석현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818, 119동 604호 (당하동, 성웅탑스빌아 파트)				
45	광활 창제	1358- 5	답	4,358. 3	302.0	곽규서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2길 66-2				
46	광활 창제	1358- 4	답	4,340. 6	291.0	서영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심창로 21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47	광활 창제	1358-3	답	4,313.1	282.0	서영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심창로 219				
48	광활 창제	1358-2	답	4,351.8	270.0	서영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심창로 219				
49	광활 창제	1358-1	답	4,322.2	268.0	이길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25, 106동 1402호 (신림동, 힐스테이트 뉴포레)				
50	광활 창제	497-18	답	241.6	67.0	곽호섭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심창로 164				
51	광활 창제	1357-1	답	3,910.8	331.0	노완진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심창로 166				
51-1	광활 창제	512-3	답	248.0	6.4	김제시					
51-2	광활 창제	1071-2	도	24,942.0	41.4	국(건교부)					
51-3	광활 창제	511-13	답	300.0	41.0	김제시					
52	광활 창제	1346-5	답	2,785.5	218.0	김호금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심창로 17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53	진봉 창제	1346- 4	답	4,324. 4	182.0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54	진봉 창제	1346- 3	답	3,842. 6	181.0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55	진봉 창제	1346- 2	답	2,992. 0	201.0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56	진봉 창제	1346- 1	답	2,181. 3	375.0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57	진봉 고사	2635	답	3,989. 3	399.0	이규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49, 201동 602호 (효자2가, 엘드효자2차 수목토아파트)				
58	진봉 고사	2644	답	3,040. 6	433.0	박종진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2길 51				
59	진봉 고사	2727	답	4,735. 3	469.0	박종진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2길 51				
60	진봉 고사	2739	답	2,585. 2	547.0	문판순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2길 43				
61	진봉 고사	2840	답	3,424. 7	520.0	현풍광 씨정만 공파중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62	진봉 고사	2854	답	1,959. 6	495.0	유기문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4길 57-48				
63	진봉 고사	2865	답	3,852. 7	380.0	유기문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4길 57-48				
64	진봉 고사	2877	답	3,605. 5	411.0	정회성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부량4길 114				
65	진봉 고사	2888	답	3,400. 3	435.0	천길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13길 244-6				
66	진봉 고사	2901	답	1,512. 2	370.0	조태석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로 241				
67	진봉 고사	2914	답	3,631. 9	377.0	김재수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4길 158-8				
68	진봉 고사	2926	답	3,638. 2	434.0	정귀순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83-60, 101동 702호(현암동 ,이편한세상여 주아파트)				
69	진봉 고사	3076	답	3,709. 7	473.0	김재수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4길 158-8				
70	진봉 고사	3102	답	3,445. 2	501.0	김병무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4길 158-4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71	광활 고사	3118	답	3,752. 5	512.0	이태복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남고로 295				
72	광활 창제	751-1 7	도	7.0	7.0	국(기획 재정부)	221				
73	광활 창제	751-1 6	전	84.0	84.0	국(기획 재정부)	221				
74	광활 창제	751-1 4	전	8.0	8.0	국(기획 재정부)	221				
75	광활 창제	750-2	대	119.0	89.0	국(기획 재정부)	221				
75 -1	광활 창제	1085- 2	제	166.0	141.8	국(건교 부)	232				
75 -2	광활 창제	1071- 2	도	24,942 .0	435.3	국(건교 부)					
75 -3	광활 창제	1063- 15	제	309.0	215.0	국(건교 부)	232				
75 -4	광활 창제	712-1	구	549.0	549.0	국(건교 부)					
76	광활 창제	713-2	구	1,160. 0	1160.0	한주봉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1길 24-15				
77	광활 창제	713-7	제	830.0	830.0	한주봉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1길 24-15				
77 -1	광활 창제	1087- 3	제	372.0	166.0	국(건교 부)	232				
77 -2	광활 창제	701-1	제	89.0	45.0	국(건교 부)	232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78	광활 창제	699-2	제	932.0	932.0	은성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723				
79	광활 창제	699-5	제	638.0	576.2	은성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723				
79-1	광활 창제	698-2	구	1,183.0	993.0	국					
79-2	광활 창제	696-2	구	1,081.0	822.0	국(건교부)					
79-3	광활 창제	1063-14	제	622.0	295.0	국(건교부)	232				
80	광활 창제	695-2	답	327.0	124.5	국(기획재정부)	221				
80-1	광활 창제	664-3	구	526.0	526.0	국					
80-2	광활 창제	665-3	구	1,230.0	1190.0	국					
81	광활 창제	665-4	전	307.0	49.2	국(기획재정부)	221				
82	광활 창제	666-8	잡	496.0	176.2	동진농업(주)	대판시 동구 남구태량정 2-13을				
83	광활 창제	666-5	잡	747.0	268.1	동진농업(주)	대판시 동구 남구태량정 2-13을				
83-1	광활 창제	666-9	제	192.0	151.5	국(건교부)	232				
83-2	광활 창제	1089	도	509.0	238.0	국(건교부)	232				
83-3	광활 창제	667-2	제	1,137.0	1137.0	국(건교부)	232				
83-4	광활 창제	667-7	전	34.5	11.0	국(농림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83-5	광활 창제	668-1 2	전	160.3	21.2	국(기획 재정부)					
83-6	광활 창제	668-9	전	401.1	23.4	국(기획 재정부)					
83-7	광활 창제	668-3 6	전	302.2	12.0	국(기획 재정부)					
84	광활 창제	668-6	구	93.6	92.3	국(농림 부)	221				
85	광활 창제	668-5	구	56.9	33.0	국(기획 재정부)					
86	광활 창제	668-3	구	253.0	253.0	국(기획 재정부)	221				
87	광활 창제	668-4	구	496.0	496.0	국(기획 재정부)	221				
88	광활 창제	668-3 5	구	11.8	11.8	국(기획 재정부)	221				
89	광활 창제	669-3 8	구	16.7	15.2	국(기획 재정부)	221				
90	광활 창제	669-3	구	26.0	26.0	국(기획 재정부)	221				
90-1	광활 창제	1063- 76	구	84.6	4.5	국(기획 재정부)	221				
91	광활 창제	1378- 12	답	3,994. 3	176.0	김명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3길 16, 102동 802호 (장동, 전주혁신 중흥에스클래 스)				
92	광활 창제	1379- 13	답	971.9	971.9	국(기획 재정부)	221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92-1	광활 창제	1380-13	답	2,054.4	149.0	임영용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591-8				
93	광활 창제	1486-14	답	4,367.1	106.3	오종춘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2길 158				
94	광활 창제	747-1	답	3,350.0	90.8	유동석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2길 158				
95	광활 창제	747-6	답	15.0	8.5	김제시	3,516				
96	광활 창제	746-3	답	286.0	200.1	김중백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14길 9, 203동 601호 (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 트)				
97	광활 창제	1486-13	답	3,753.1	7.3	김중백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14길 9, 203동 601호 (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 트)				
98	광활 창제	745-7	전	221.0	49.7	여남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3-7, 105동 1002호 (여의동2가, 골드클래스)				
99	광활 창제	745-25	전	3.5	3.5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68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과 소관 사무 변경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속 정원 등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 5,493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처 정원 : 123명(변동 없음)
- 변경사항 : 의회사무처 등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별표 3)

직급	직 렬	정 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4급	행정·별정	4	3	△1
	행정·기술·별정	2	3	+ 1
5급	행정	12	13	+ 1
	행정·농업	1	0	△1
	행정·환경·사회복지	1	0	△1
	행정·농업·환경·사회복지	0	1	+ 1
6급	공업	1	0	△1
	행정·공업	0	1	+ 1
7급	행정	24	26	+2
	행정·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의 :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가족과, 자치제도과, 감사위원회사무국, 법무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4. 7. 19. ~ 2024. 7. 22.(3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7.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전화 : 063-280-4238, FAX : 063-280-211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238)

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2. 12. 30., 2023. 4. 18., 2023. 6. 23., 2023. 8. 11., 2023. 12. 8., 2024.1.12.>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제65조 관련)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의 행 기	제 정 관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 계			5,493	1,460	123	3,512	337			61
정 무 직 계			4	1						3
		정무직 소계	4	1						3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감사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 정 직 계			14	6	8					
		1급상당 소계	1	1						
		관리관·별정(정무부지사)	1	1						
		4급상당 소계	7	1	6					
		비서실장	1	1						
		행정·별정	3		3					
		행정·기술·별정	3		3					
		5급상당 소계	2	2						
		비서관	1	1						
		국제관계대사	1	1						
		6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7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일 반 직 계			1,794	1,227	115	96	303			58
		2-3급 소계	3	2	1					
		2~3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소계	11	10		1				
		3 부이사관	11	10		1				
		3-4급 소계	2	1						1
		3~4 행정·기술	2	1						1
		4급 소계	80	59	5	5	10			1
		4 행정	33	18	5	4	5			1
		4 행정·기술	43	41			2			
		4 기술·농업연구	1			1				
		4 기술·수의연구	1					1		
		4 기술·농지연구	1					1		
		4 기술·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직 렬 별								
	5급	소 계	320	253	16	11		30		10
	5	행정	141	101	13	9		10		8
	5	공업	1	1						
	5	농업	4	3				1		
	5	녹지	3	2				1		
	5	해양수산	5	5						
	5	시설	18	15				2		1
	5	운전	1	1						
	5	행정·사회복지	13	13						
	5	행정·숙기	1		1					
	5	행정·공업	13	12				1		
	5	행정·농업	15	13	0			2		
	5	행정·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1			1				
	5	행정·사서·시설	1	1						
	5	행정·녹지	2	2						
	5	행정·해양수산	1	1						
	5	행정·보건	1	1						
	5	행정·환경	4	4						
	5	행정·시설	28	26	1					1
	5	행정·방재안전	1	1						
	5	행정·방송통신	3	3						
	5	행정·학예연구	1	1						
	5	공업·환경	1	1						
	5	공업·시설	2	1				1		
	5	농업·수의	6	6						
	5	녹지·녹지연구	1					1		
	5	수의·수의연구	6	2				4		
	5	해양수산·시설	1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5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5	보건·간호	5	5						
	5	보건·약무	1	1						
	5	행정·보건·간호	1	1						
	5	환경·시설	3	3						
	5	행정·공업·환경	3	3						
	5	행정·공업·시설	3	2		1				
	5	행정·농업·수의	0							
	5	행정·농업·시설	2	2						
	5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회	차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의	제	정	관	
직	종	급	직	렬	별																							
	5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0		0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보건·공업					1		1																			
	5	행정·환경·녹지					2		2																			
	5	행정·환경·녹지·시설					1		1																			
	5	행정·공업·녹지					0		0																			
	5	행정·농업·사회복지					0																					
	5	행정·환경·사회복지					0						0															
	5	행정·농업·환경·사회복지					1						1															
	5	농업·환경·수의					1		1																			
	5	수의·수의연구·농업연구					2															2						
	5	농업·농업연구·수의·수의연구					1															1						
	5	행정·수의·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환경·시설					5		5																			
	5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5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5	보건·식품위생·의무					1		1																			
	5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5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614		458				44				12				72					28		
	6	행정					237		177				31				7				10					12		
	6	세무					7		6																	1		
	6	전산					14		12								1									1		
	6	사회복지					8		7												1							
	6	사서					2		1				1															
	6	속기					2						2															
	6	공업					21		18				1				1									1		
	6	농업					25		21												3					1		
	6	녹지					13		9												4							
	6	수의					11		3												8							
	6	해양수산					25		16												9							
	6	보건					4		4																			
	6	환경					10		10																			
	6	시설					70		57				1								7					5		
	6	방송통신					6		6																			
	6	운전					11		5				2								4							
	6	행정·세무					5		4																	1		
	6	행정·전산					10		9				1															
	6	행정·사회복지					8		6																	2		
	6	행정·사서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회	차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의	행	기	제	정	관
직	급	별																							
6	행정·공업		6		4		1											1							
6	행정·농업		9		7		1											1							
6	행정·녹지		2		2																				
6	행정·보건		1		1																				
6	행정·환경		7		7																				
6	행정·시설		18		16		1																		1
6	행정·방재안전		1		1																				
6	행정·방송통신		2		2																				
6	행정·학예연구		1															1							
6	전산·방송통신		3		2																				1
6	전산·시설		1		1																				
6	사회복지·보건		1		1																				
6	사회복지·간호		1		1																				
6	공업·환경		1		1																				
6	공업·운전		1															1							
6	농업·시설		1															1							
6	농업·수의		8		8																				
6	농업·농업연구		2									1						1							
6	농업·수의·농업연구		1															1							
6	녹지·시설		1		1																				
6	녹지·녹지연구		2															2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6	수의·농업연구		1															1							
6	수의·수의연구		15		2													13							
6	보건·식품위생		8		8																				
6	보건·의료기술		2		2																				
6	보건·간호		4		3							1													
6	보건·약무		1		1																				
6	보건·환경		2		2																				
6	보건·공업		1		1																				
6	환경·시설		1		1																				
6	시설·방재안전		1		1																				
6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6	행정·공업·시설		3		3																				
6	행정·시설·녹지		1		-																				1
6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6	사회복지·보건·환경		1		-																				1
6	행정·보건·간호·약무		1		1																				
6	통신운영		1		1																				
6	기계운영		2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중 별	직 급 별	직 렬 별								
	6	사무운영	5	4	1					
	7급	소계	573	360	37	35		126		15
	7	행정	197	145	26	10		7		9
	7	세무	7	7						
	7	전산	12	8		2		1		1
	7	사회복지	9	9						
	7	사서	1	1						
	7	속기	4		4					
	7	공업	25	12		4		8		1
	7	농업	16	11		1		4		
	7	녹지	12	7				5		
	7	수의	48					48		
	7	해양수산	15	8				7		
	7	보건	2	2						
	7	환경	14	11		3				
	7	시설	57	45	1	2		6		3
	7	방재안전	1	1						
	7	방송통신	6	4		1		1		
	7	위생	1			1				
	7	시설관리	1			1				
	7	운전	17	6	2	1		8		
	7	행정·세무	2	2						
	7	행정·전산	10	9	1					
	7	행정·사회복지	6	6						
	7	행정·사서	2	2						
	7	행정·공업	8	7	1					
	7	행정·농업	2	1	1					
	7	행정·녹지	1					1		
	7	행정·보건	2	1		1				
	7	행정·환경	4	3		1				
	7	행정·시설	7	6				1		
	7	행정·방재안전	3	3						
	7	행정·방송통신	1	1						
	7	행정·농촌지도	1			1				
	7	전산·방송통신	3	3						
	7	전산·농업연구	1			1				
	7	공업·녹지	2			1		1		
	7	공업·시설	2	2						
	7	농업·시설	1					1		
	7	농업·수의	8	7				1		
	7	행정·학예연구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회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의	제
직	직	직																				
종	급	렬																				
별	별	별																				
7	7	농업·농업연구	1															1				
7	7	농업·농촌지도	1									1										
7	7	녹지·녹지연구	1															1				
7	7	수의·수의연구	8															8				
7	7	해양수산·환경	2		2																	
7	7	해양수산·방송통신	1		1																	
7	7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7	7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7	7	보건·식품위생	8		7							1										
7	7	보건·약무	1		1																	
7	7	보건·간호	8		6							1					1					
7	7	시설·방송통신	1		-																1	
7	7	시설·방재안전	2		2																	
7	7	시설·사회복지	1		1																	
7	7	방재안전·방송통신	1		1																	
7	7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7	7	행정·보건·간호	1		1																	
7	7	행정·농업·시설	1		1																	
7	7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7	7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7	7	행정·시설·공업·녹지	2															2				
7	7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7	7	농업·시설·공업	1															1				
7	7	농업·보건·식품위생	1		1																	
7	7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7	7	전화상담운영	0																			
7	7	전기운영	0																			
7	7	기계운영	0									0										
7	7	열관리운영	2									1					1					
7	7	사육운영	1														1					
7	7	사무운영	3		1													2				
8급	8급	소계	130		53			8				19					48				2	
8	8	행정	39		23			5				3					6				2	
8	8	전산	1														1					
8	8	사회복지	2		2																	
8	8	사서	1									1										
8	8	속기	2							2												
8	8	공업	17		2			1				6					8					
8	8	농업	6		3												3					
8	8	녹지	6		1												5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8	해양수산	6	1			5		
	8	보건	0	0					
	8	환경	1			1			
	8	시설	12	6			6		
	8	운전	10	1	0	6	3		
	8	행정·전산	3	2			1		
	8	행정·사회복지	2	2					
	8	행정·농업	1	1					
	8	행정·시설	1				1		
	8	행정·보건	1	1					
	8	전산·방송통신	1	1					
	8	공업·환경	1	1					
	8	공업·운전	2				2		
	8	시설·방재안전	1	1					
	8	시설·공업	1				1		
	8	보건·식품위생	1	1					
	8	보건·간호	1	1					
	8	위생·조리	1	1					
	8	전기운영	1			1	-		
	8	전화상담운영	0						
	8	기계운영	5	1			4		
	8	농림운영	2				2		
	8	사무운영	2	1		1			
	9급	소계	52	26	4	8	13		1
	9	행정	1	0	1				
	9	공업	1			1	-		
	9	농업	1				1		
	9	시설	1	1					
	9	해양수산	1				1		
	9	방송통신	1	1					
	9	방송통신·방재안전	1	1					
	9	운전	3			-	3		
	9	행정·시설	2				2		
	9	행정·농업	1				1		
	9	위생·조리	0						
	9	통신운영	1		1				
	9	기계운영	2			1	1		
	9	사육운영	1				1		
	9	사무운영	35	23	2	6	3		1
		전문경력관 소계	9	5			4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직 렬 별								
		소방위	310	40		270				
		소방장	464	49		415				
		소방교	756	39		717				
		소방사	1,616	28		1,588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정책기획관실 강혜선(063-280-4238)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69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설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사용자의 범위, 사용신청, 사용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및 사무 위탁 근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14조)
-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지원, 도지사의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등 : 자치제도와, 자치행정과,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여성가족과, 예산과
- 라. 입법예고 : 2024. 7. 19.(금) ~ 8. 8.(목)(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교육협력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교육협력추진단(전화 : 063-280-2533, FAX : 063-280-27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교육협력추진단 청소년팀(063-280-25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전북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챔버리1로 300 일원

제4조(운영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청소년의 심신단련·자질향상·취미개발·개척정신·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활동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3조의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경우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수탁자 등이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 등이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세부사항을 도보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련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이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사용신청서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

지된 때: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4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제11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제한)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환자 또는 수련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수련시설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의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기간갱신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전적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⑧ 비상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위원회 위촉은 2회로 제한한다.

제1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의4(자체운영규정) 도지사 및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

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수련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상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상한요금	비 고
시설 사용료	숙 박 실	1실, 1박	100,000	당일 12:00부터 익일 11:00까지
	야 영 장	1박	40,000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 (당일 비숙박도 1박으로 계산)
	오토캠핑장	1박	50,000	
	1층 대강당	4시간 기준	300,000	
	2층 대회의실	4시간 기준	250,000	
	2층 중회의실	4시간 기준	120,000	
	2층 소회의실	4시간 기준	70,000	
	2층 분임토의실	4시간 기준	20,000	
	대집회장	4시간 기준	500,000	
	체육시설 (축구장)	2시간 기준	30,000	공휴일 50퍼센트 가산
	체육시설 (농구장)	2시간 기준	5,000	
	체육시설 (족구장)	2시간 기준	5,000	

- ① 시설(내부)사용료에는 냉·난방기 및 음향기기 사용료 등이 포함됨
- ② 야영장/오토캠핑장 사용료에는 주차장 및 전기 사용료가 포함되며, 오물처리비가 별도 부과됨
- ③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 상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다를 수 있음

참고**관계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 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1**비용추계서****I. 비용추계 요약****1. 재정수반 요인**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직접 운영 시 인건비, 운영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내 운영관리 기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소요액 추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7.

- 인건비 : 35명 기준(국립시설 70% 적용), 2019년 기준 국립시설의 급여성경비를 모두 포함한 인건비지급 수준은 평균 인건비 약 4,300만원으로 적용함
- 인건비성 비용인건비의 발생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대비 14% 적용
- 운영비 : 유사국립시설 기준으로 운영관리비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약 면적당 65천원으로 제시($8,525\text{m}^2 \times 65,000\text{원} = 554,125,000\text{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인건비 (인건비성 포함)	1,716	1,716	1,716	1,716	1,716	8,580
운영비	554	554	554	554	554	2,770
합 계	2,270	2,270	2,270	2,270	2,270	11,350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도 비	1,770	1,770	1,770	1,770	1,770	8,850
수 익 금	500	500	500	500	500	2,500
합 계	2,270	2,270	2,270	2,270	2,270	11,350

5. 부대의견 : 없음**6. 협의사항 : 예산추계****7. 작성자 : 교육협력추진단 김정아(2533)****II. 비용추계 상세내역****1. 총 소요 예산 : 11,350백만원****2. 산출 근거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붙임2**규제영향분석서****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수련시설 사용신청, 사용료의 반환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 국 장: 지방부이사관 박현규 단 장: 지방서기관 이지형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류문선 담당자: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정아							
4. 근거법령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등							
5. 분석방법	주관부서 검토 및 직접 작성							
6. 규제의 내용	○ 신설 규제 - 제7조(사용신청) :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							
7-1. 규제존속 기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시까지							
7-2. 규제존속 사유	한정된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신청 및 무분별한 신청 취소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통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며, 규제 외의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규제를 유지하여야 함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1) 규제의 신설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사용신청)** 청소년 수련시설은 한정된 공간을 운영하게 되어 사전 사용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 운영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 발생이 예상됨
-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을 경우, 당일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을 원하는 제3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발생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 문제 발생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사용신청)** 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사전 사용신청서 제출 규정 필요
- **(사용료 반환)** 무분별한 시설사용 취소 방지 등을 위한 사용료 반환 규정 필요

다. 규제의 목표설정

- **(사용신청)** 시설 사용신청 10일 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사용료 반환)** 사용예정일 이전 취소일별로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본 규제는 기술 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사전 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 반환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시·도 조례와 비교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대체 불가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 어려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와의 중복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분석

- : 사용료 일부 반환의 경우 사용예정자의 손해비용 발생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분석

- :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취소 예방으로 제3자 사용기회 제공 등 공공의 편익 발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 규제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에 비해 발생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 절차가 규정되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 가능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규제의 존속기한 설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 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조례로 직접 운영의 경우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는 불가피하며, 위탁의 경우 조직·인력은 소요되지 않으나 향후 적자보전금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대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적정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적정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262호

**비영리민간단체(전라북도주민자치협의회)
명칭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명칭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7월 19일

1. 등록번호 : 제2018-전라북도-22호
2. 단체의 명칭 : 전라북도주민자치협의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유 희 성
4.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쌍정길 6
5. 주된 사업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행사 및 문화체육 관련 행사
6. 최초등록연월일 : 2018. 11. 21.
7. 변경 내용
-명칭 변경 (변경전 : 전라북도주민자치협의회 ⇒ 변경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협의회)

※ 기타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행정팀 배병훈(280-294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26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사항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에 의하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7월 19일

등록 번호	분할합병된 법인		분할합병후 존속법인		수리 일자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112413	씨에이치더블유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 김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3, 2층 (작전동, 상록빌딩)	주식회사 삼일네트웍 대표 황재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62, 2층(인후동 2가)	'24.7.5.

전라북도 공고 제2024-12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2006-1-전라북도-49
2. 단체명칭 : 전북아파트OOO연구소
3. 대 표 자 : 안 O O
4.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5-23(다가동1가)
5. 주된사업 : 아파트 공동체 형성, 아파트 입주자 권익보호
6. 등록일자 : 2006. 8. 29.
7. 등록 말소 사항

등록말소일	등록 말소 사유
2024. 7. 19	자진 말소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279호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대산~무장 (지방도 796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1개소(내접원 지름 27.0m)		
도로공사 구간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527-2번지 일원(지방도 796호선)		
도로공사 시행장소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527-2번지 일원(지방도 796호선)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3.12.1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당초 : 2024. 7.31 변경 : 2024.12.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고창 공음신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 (변경사유)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칠암무명 1교, '24. 8월 준공) 지연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기간연장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24. 7. 12.(금) 15:00 간부회의 시

관리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4-25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집중 실시	○ 최근 남원 초·중·고에서 학생과 교직원 약1,000여명이 구토,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함 ○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빈도가 늘어나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집단급식소에 사전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법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바람 (주관: 감염병관리과/협조: 보건환경연구원)
	당면·현안업무	○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및 수해복구 철저 - 최근 집중호우로 완주·익산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안부 사전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고,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람 - 또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뜻으로 임해주시기 바람 (주관: 자연재난과, 총무과/협조: 전 실국)

관리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및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 철저 - 지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7.8.)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의(7.8.)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특히, 국회의원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기 바람 (주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협조: 전 실국)
	당면·현안 업무	○ 자율팀제 정착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본청 270개 팀 중 233개 팀을 자율팀제로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음. 자율팀제는 팀장의 업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여 도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취지임 - 취지에 맞도록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능동적인 도정 발전을 위해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 나가기 바람 (주관: 전 실국)

관리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 저출생 대응 TF 운영 내실화 및 홍보 강화 - 7.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대응 TF 킷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전북도 저출생 TF 구성·운영(7월~) > ▶ (구성) 12개 과* 담당 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등 ※ 주재: 행정부지사 * 기업유치과, 기업애로해소과, 예산과, 청년정책과, 총무과, 사회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주택건축과, 교육협력추진단, 소방본부(119대응) ▶ (분과) ①취업·결혼, ②건강한 출생, ③행복한 양육, ④가족친화 직문화 확산 ▶ (정책발굴 지원) 분야별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연원 매칭 -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나열하기보다는, 우리 도만의 상징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여 내실을 다지고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도만의 특색을 만들어 가기 바람 (주관: 청년정책과/협조: 해당 실국) ○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공모 대응 철저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선정이 공고(7.1.)됨에 따라,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주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대책 강구 -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면허증 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 중앙부처와 별도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콜택시 바우처 지급 등 지역 맞춤형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주관: 교통정책과)

군산시 고시 제2024-9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3-82호(2023.5.19.)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8-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군 산 시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8-4, 428-9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
 - 명 칭 : 군산스테이 관광호텔 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공사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시설면적 : 유원지 648,380㎡(변경없음), 휴양시설-관광호텔 19,832㎡(변경없음)
 - 건축대지면적 : 18,623㎡(변경없음)
 - 건축계획(변경)

구 분	건 축 개 요		증 감	비 고
대지면적	18,623㎡ (변경없음)			
	기 정	변 경		
건축면적	2,667.72㎡	3,059.51㎡	증) 391.79㎡	
건 폐 율	14.3248%	16.4286%	증) 2.1038%	
건축연면적	12,752.57㎡	13,144.36㎡	증) 391.79㎡	
용적률산정연면적	10,342.06㎡	10,733.85㎡	증) 391.79㎡	
용 적 률	55.5338%	57.6375%	증) 2.1037%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건물규모	주1동: 지하1층~지상5층 주2동: 지상1층~지상7층 부1동: 지하1층~지상2층	주1동: 지하1층~지상5층 주2동: 지상1층~지상7층 부1동: 지하1층~지상2층 부2동: 지상1층		
주 용 도	숙박시설(관광호텔), 제1,2층근린생활시설			

[당초] 주2동부1동/지하1층~지상7층, 건축면적 2,667.72㎡, 연면적 12,752.57㎡,
건폐율 14.3248%, 용적률 55.5338%

[변경] 주2동부2동/지하1층~지상7층, 건축면적 3,059.51㎡, 연면적 13,144.36㎡,
건폐율 16.4286%, 용적률 57.6375%

- 금회 부2동/1층 연면적 391.79㎡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군산스테이주식회사

나. 주소 :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56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23. 5. 19. ~ 202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1	428-4	대	14,210	14,210	군산스테이 주식회사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56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 지상권	
								주식회사 에코케피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논현동)	근저당	
								주식회사 에코케피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논현동)	지상권	
								스마트산업주 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로11로 18, 3층305호	근저당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	428-9	대	4,413	4,413	군산스테이 주식회사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56	주식회사 에코케피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논현동)	근저당	
								주식회사 에코케피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논현동)	지상권	
								스마트산업주 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로11로 18, 3층305호	근저당	
	계	2필지		18,623	18,623						

군산시 공고 제2024-159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부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나운동 17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부도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9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74-3번지 외 40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부도로)사업

2) 명 칭 : 리츠프라자호텔~지곡교회간 유원지 내부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유원지) 설치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유원지 내부도로 L=1,002m, B=20m, A=19,28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1195-18	도	5,448.0	489.0		군산시				
2		1195-87	도	79.0	32.0		군산시				
3		1195-86	도	1.0	1.0		군산시				
4		1195-3	유	355.0	7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		1504	도	1,461.0	634.0		농수산부				
6		1196-1	도	92.0	92.0		군산시				
7		1195-14	도	327.0	26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		1196-6	유	2,742.0	3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		1195-6	전	2,892.0	21.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6-1	이영수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슨주식회사		가등기권자	
10		1196-2	도	22.0	1.0		군산시				
11		산282-3	도	1,394.0	1,302.0		군산시				
12		213-1	도	2,593.0	1,595.0		군산시				
13		265-1	전	1,153.0	63.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05	대구달성서씨승사랑공파옥종친회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슨주식회사		가등기권자	
14		1201	전	1,080.0	134.0		군산시				
15			264-1	전	978.0	126.0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65, 321동 706호	전알찬	이상길		지분1081분의 122.3
16			263-3	도	1,126.0	1,126.0		군산시	전알찬		지분1081분의 958.7
17			1494	도	1,258.0	1,074.0		농수산부			
18			264-3	전	800.0	52.0	264-2	이상수	군산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19			264-2	대	236.0	27.0	264-2	이상수	군산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20			264-6	전	12.0	11.0	264-2	이상수	군산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21			263-2	전	145.0	67.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85-1 한라비발디1단지 아파트 103-1702	김부강			임의경 매로인한 매각
22			산270	임	1,143.0	173.0	중앙로1가15-5	경주이씨상서공파사당내중중			
23			산270-1	도	940.0	940.0		군산시			
24			248-6	도	1,963.0	1,458.0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관리내용	
25	나운동	248-4	전	6,883.0	29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284-9	김천왕 외 1인	김천왕		지분2분의1	
								김왕태		지분2분의1	
26		산266-4	도	1,500.0	1,088.0		군산시				
27		산249-1	도	1,737.0	1,334.0		국토교통부				
28		산248-6	도	851.0	676.0		군산시				
29		산266-1	임	2,684.0	105.0	234	제주고씨문충 공파문화충중				
30		산265-1	임	1,923.0	249.0	761-20	이상규				
31		산252-5	도	916.0	788.0		군산시				
32		산252-1	임	1,077.0	18.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85-3 한라비발디2단지 아파트 201동 504호	조남일	조남희		채권자	
33		산249-2	도	1,379.0	696.0		군산시				
34		166-5	전	444.0	33.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85-3 한라비발디2단지 아파트 201동 504호	조남일				
35		산252-3	도	99.0	99.0		군산시				
36		171	전	535.0	51.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참리 71-5 두산연립 에이-206	신영길 외 1인	농협은 행주식 회사	지상권 자		
37		166-8	도	3,550.0	2,591.0		군산시				
38		173	전	1,323.0	9.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5-5 대우아파트 104동 104호	이병룡				
39		1494-5	도	324.0	126.0		농수산부				
40		산214-1	도	4,491.0	887.0		군산시				
41		174-3	도	2,395.0	443.0		군산시				
총 계				60,351	19,282						

익산시 고시 제2024 - 145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53-5번지 일원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익 산 시 장

1.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송유설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844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시설녹지	4,690	13,425	건고576 94.1.7	
변경	1	송유설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844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시설녹지	4,690	13,448	〃	선형 변경

2.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송유설비	▶ 선형변경 및 면적증가 (연장변경 없음)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153-5번지 일원 - 면 적 : 13,425㎡→13,448㎡(증 23㎡)	▶ 송유관 매설 현황과 불일치하는 구간 일부 선형 조정

3.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 : “실읍생략” 끝.

익산시 고시 제2024 - 14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익산시 신동, 모현동2가 일원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익 산 시 장

1.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3	모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익산시 신동, 모현동2가 일원	153,145	감 2,614	150,531	내무부고시 제417호 (58.02.21)	

2.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3	모인 근린공원	· 면적변경 - A=153,145㎡ → 150,531㎡ (감 2,614㎡)	· 지적측량 및 공원현황을 고려하여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부지 제척 등 합리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선형조정 및 변경

3.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 : “실읍생략” 끝.

완주군 고시 제2024-78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7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83-5 외 1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이서휴게소 상행선(천안방향) 휴게소(전기자동차충전소)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교통광장 : A=426,594㎡
 - (대지면적 : 천안방향 휴게소: 27,508㎡, 순천방향 휴게소: 30,453㎡)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73.94	△7.28	2,666.66	3,365.66	△7.28	3,358.38	
주1~3,부1~9	2,619.86	-	2,619.86	3,311.58	-	3,311.58	
주4	54.08	△7.28	46.80	54.08	△7.28	46.80	급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건축허가일 ~ 2024. 04. 30.
 - 변 경 : 건축허가일 ~ 2024. 0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완주군 고시 제2024-79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7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86 외 38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이서휴게소 하행선(순천방향) 휴게소(전기자동차충전소)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교통광장 : A=426,594㎡
 - (대지면적 : 천안방향 휴게소: 27,508㎡, 순천방향 휴게소: 30,453㎡)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31.24	△5.32	3,025.92	3,758.07	△5.32	3,752.75	
주1~3,부1~9	2,991.72	-	2,991.72	3,718.55	-	3,718.55	
주4	39.52	△5.32	34.20	39.52	△5.32	34.20	금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건축허가일 ~ 2024. 04. 30.
 - 변 경 : 건축허가일 ~ 2024. 0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완주군 고시 제2024-82호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봉동읍행정복지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봉동읍행정복지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7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봉동읍 장거리 117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봉동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4,5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 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필지				13,346	4,561					
1	봉 동 읍 장기리	1172-8	답	1,959	1,286	완주군				
2	봉 동 읍 장기리	1172-9	답	2,000	1,311	홍 직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82번길 55, 103동 505호 (도산동, 1차대주파크빌)			
3	봉 동 읍 장기리	1172-14	답	1,071	924	홍 직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82번길 55, 103동 505호 (도산동, 1차대주파크빌)			
4	봉 동 읍 장기리	1174-14	답	407	99	농림부				
5	봉 동 읍 장기리	1174-15	답	28	28	농림부				
6	봉 동 읍 장기리	1189-49	구	7,881	913	농림부				

완주군 공고 제2024-1141호

완주군 공고 제2024-1141호

완주 군계획시설(학교:삼봉유치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삼봉유치원 임시창고 설치를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학교:삼봉유치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7월 19일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04-1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 삼봉유치원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6,506.8㎡ 중 12㎡(임시창고)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삼봉유치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중앙로 91-7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4. 11. 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1필지						6,506.8	12.0						
1	삼례	수계	1204-1	학	6,506.8	12	전라북도 (교육감)						

-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
-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 기간 내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24-1296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열람·공고

고창군 고시 제2023-166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모양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19일

고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읍 덕산리 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군계획시설(근린공원)
 - 사업명 : 고창읍 도시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63,409㎡(공원면적 135,7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창군수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5. 12. 31.
6.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 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 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 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75필지		72,759	63,409						
1	고창읍 덕산리	3	답	1,128	1,128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	3-3	답	1,782	1,440	고창군					
3	“	4-1	유지	760	760	고창군					
4	“	4-3	유지	513	513	고창군					
5	“	5-1	도로	333	12	고창군					
6	“	5-2	유지	179	179	고창군					
7	“	5-4	도로	277	53	고창군					
8	“	6-1	유지	5,924	5,924	고창군					
9	“	6-2	도로	79	72	고창군					
10	“	6-3	유지	109	109	고창군					
11	“	7-2	유지	1,161	1,161	국 (농수산부)					
12	“	7-3	도로	30	28	고창군					
13	“	7-4	유지	56	56	국 (농수산부)					
14	“	10-1	답	2,655	2,655	고창군					
15	“	10-2	유지	3,586	3,586	고창군					
16	“	10-3	유지	87	87	오*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고창군		가치분	
17	“	11	답	1,597	1,597	고창군					
18	“	12-1	답	1,651	1,535	고창군					
19	“	12-2	답	1,693	1,693	고창군					
20	“	12-3	답	3,092	3,092	고창군					
21	“	12-13	전	354	136	고창군					
22	“	12-19	전	93	2	고창군					
23	“	12-21	전	251	109	고창군					
24	“	12-24	답	224	224	고창군					
25	“	13	답	1,580	1,580	고창군					
26	“	14	전	1,074	602	고창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 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75필지	72,759	63,409						
27	고창읍 덕산리	15-1	유지	317	317	고창군					
28	“	15-2	전	1,091	1,091	고창군					
29	“	19-9	전	660	94	고창군					
30	“	20	답	4,488	4,488	이*희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김*영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31	“	20-1	도로	67	67	고창군					
32	“	22	답	2,819	2,819	김*순	무장면 목우송정길				
33	“	22-1	답	378	378	고창군					
34	“	22-2	도로	274	274	김*순	무장면 목우송정길				
35	“	23-3	답	1,436	1,425	고창군					
36	“	23-4	답	3,376	3,376	고창군					
37	“	23-5	답	1,587	1,548	고창군					
38	“	23-7	전	645	645	고창군					
39	“	23-21	전	344	344	고창군					
40	“	23-22	전	979	979	고창군					
41	“	23-23	전	499	499	고창군					
42	“	23-25	전	453	453	고창군					
43	“	23-26	전	605	605	정*근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4	“	23-27	전	155	155	고창군					
45	“	23-42	도로	245	3	고창군					
46	“	23-43	전	60	28	고창군					
47	“	23-44	전	112	112	고창군					
48	“	23-45	도로	89	89	고창군					
49	“	23-46	답	130	14	고창군					
50	“	23-47	답	415	142	고창군					
51	“	23-48	답	74	74	고창군					
52	“	23-49	답	1,081	564	고창군					
53	“	23-51	답	7	7	고창군					
54	“	23-52	답	616	399	고창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 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75필지		72,759	63,409						
54	고창읍 고덕산리	23-52	답	616	399	고창군					
55	“	23-53	전	495	166	고창군					
56	“	23-54	전	24	24	고창군					
57	“	23-57	전	56	52	고창군					
58	“	23-58	전	30	30	고창군					
59	“	23-62	전	175	43	고창군					
60	“	23-63	전	22	22	고창군					
61	“	23-64	도로	59	59	고창군					
62	“	23-65	도로	15	15	고창군					
63	“	23-66	도로	290	290	고창군					
64	“	24-1	전	380	49	전라북도					
65	“	218-1	답	699	699	고창군					
66	“	500-22	구거	3,447	2,729	국(농림부)					
67	“	산39-1	묘지	9,141	8,508	고창군					
68	“	산39-6	도로	2,162	20	고창군					
69	“	산39-16	묘지	202	202	고창군					
70	“	산42-1	도로	1,139	276	고창군					
71	“	산43-8	임야	298	298	고창군					
72	“	산43-11	도로	61	24	고창군					
73	“	산44-6	임야	496	202	고창군					
74	“	산44-8	임야	298	298	고창군					
75	“	0-9942			81				지적재조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소방서 공고 제2024-01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 송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전 주 완 산 소 방 서 장

2024년 07월 19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울티마틀레 유한회사

나.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길 11

2. 위반내용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이행계획 지연완료·보고

3.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1,054,000원(금일백오만사천원) *가산금 포함

5. 납부기한 : 2024. 08. 10.

6. 납부방법 : 전주완산소방서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로 납부장소에 납부

7.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전주완산소방서 대응예방과 ☎ 063-220-4241)